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확정된 기준, 다가온 의무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동향과 산업계 대응 전략

2026. 7. 30. (목) 14:00~17: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 주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 주관 |

KEI 한국환경연구원

KASCC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한국에너지공단



2026 상반기 산업계 적응경쟁력 포럼 주요일정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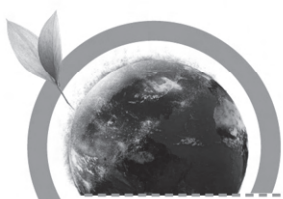
- 정책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포럼 운영

행사 개요

- 2026년 7월 30일(목), 14:00~17:00
-
-
-

주요일정

1부 세션. KSSB 확정과 EU 간소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부 세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목 차

2026 상반기
산업계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c o n t e n t s

1부 세션

KSSB 확정과 EU 간소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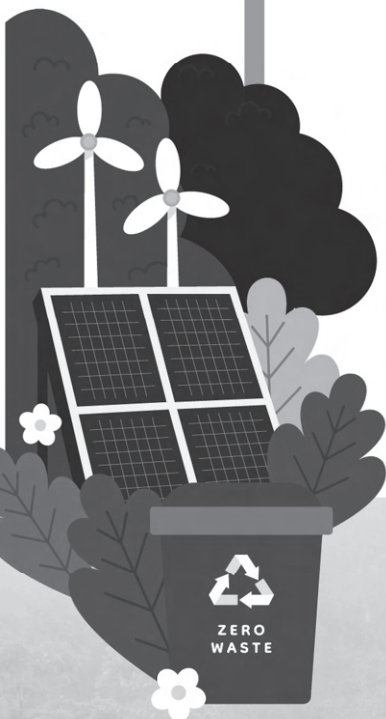
.....

2부 세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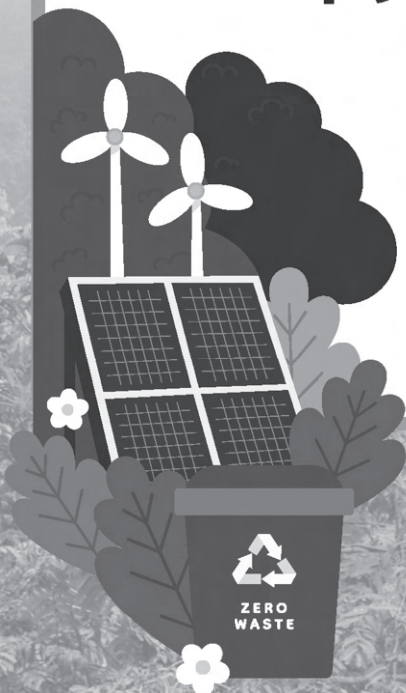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1부 세션



**KSSB 확정과 EU 간소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1부 세션

KSSB 확정과 EU 간소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KSSB 최종 기준과 국내 공시 도입 로드맵 최종안

윤나영

[2026 상반기 산업계 적응경쟁력 포럼]
KSSB 최종 기준과 국내 공시 도입 로드맵 최종안

2026. 7. 30. | 한국회계기준원 윤나영 팀장



01

국제 동향 및 필요성

01 국제 동향 및 필요성 -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 기후 위기, 자본시장의 변화, 사회적 기대의 확대가 맞물리며,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ISSB의 IFRS S1·S2 기준은 기업이 이러한 공시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관한 공시를 통해 회복력 있는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때, 그 정보는 장기적 투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BlackRock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Global Principles (투자 스투어드십 글로벌 원칙)

 기후 위기

▶ 환경 이슈에서 사업 리스크로

폭염·홍수·이상기후의 빈도와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환경 이슈로만 여겨지던 기후가, 이제는 생산 차질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영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마주하는 위험은 기상이변이 사실·공급을 직접 위협하는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전환 과정의 규제·비용으로 작용하는 전환 리스크로 나타납니다.

 자본 시장의 변화

▶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요구하는 흐름이 자리잡았습니다.

이 요구는 사회적 명분이 아니라 수익과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다뤄지며, 자본시장이 미래 위험을 앞당겨 반영하는 만큼 자금의 흐름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송리스크의 부상

▶ 자율적 약속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

기업이 내건 지속가능성 약속과 공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투자자·시민사회·규제기관이 면밀히 지켜보는 감시 환경이 자리잡았습니다. 전 세계 기후·지속가능성 소송은 2025년 중반 누적 3,099건까지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약속과 실제 행동의 간극을 문제 삼는 그린워싱 소송이 기업 대상 분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원고 승소율은 60%를 넘습니다.

이제 기업은 선언을 넘어 실제 이행을 입증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평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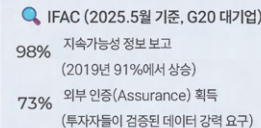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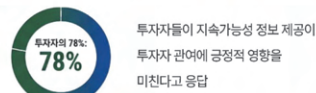
출처 :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Global Principles

3

01 국제 동향 및 필요성 -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

→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정보 요구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투자 결정의 패러다임 변화



출처 : PwC Global Investor Survey 2025 | IFAC State of Play 2025 (2023년 데이터 기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요구

BlackRock 2026

재무적 중요성 중심의 공시 요구

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기회를 전략에 어떻게 통합했는지 공시하도록 기대. 공시 미흡 시 의견권 행사를 통해 우려 전달

"지속가능성 정보는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의사결정에 유용한(Decision-useful) 정보여야 함"

— BlackRock 2026 Stewardship Guidelines

NZAOA 2026

넷제로 달성 경로 공시 압박

UN 산하 자산소유자 연합(87개 기관, 9.2조 달러)은 투자 대상 기업에 2050 넷제로 달성 경로와 중간 목표 공시를 요구

출처 : BlackRock 2026 Stewardship Guidelines | NZAOA TSPS (2026.3월)

왜 투자자는 요구하는가?

 **비교 가능성 (Comparability)**

ISSB 등 글로벌 표준을 통한 객관적 비교 국가·산업 간 일관된 기준으로 기업가치 평가가능

 **신뢰성 (Reliability)**

엄격한 공시 및 제3자 인증으로 그린워싱 제거 검증된 데이터만이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

 **재무제표와의 연계 (Connectivity)**

지속가능성 전략이 재무제표(현금흐름·자본비용)에 실제로 연결되는지 평가 투자자는 공시를 통해 전략의 실행가능성을 판단

4

01 국제 동향 및 필요성 - 국제 규제 및 공시체계 동향

→ EU는 공시·공급망 실사·탄소비용의 제도화로, 아시아는 ISSB 기반 제도의 도입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요구

EU



아시아·태평양

※공시제도 도입 준비 중인 아·태 14개국 (중국·대한·인도·베트남·태국·필리핀·뉴질랜드 등)



5

02

국내 공시 로드맵 최종안

02 국내 공시 로드맵 최종안 - 금융위 로드맵 최종안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GX전환 뒷받침을 위해 공시 로드맵을 전향적으로 수정

구분	초안 ('26.2월)	최종안 ('26.7월)	변동
1 단계적 적용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부터 단계적 확대 (예: '29년 10조원)	'28년 10조원 → '29년 5조원 '30년 2조원 확대 검토	변경
2 공시 채널	거래소 의무공시로 도입,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 전환	'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시행	변경
3 첫해 완화	공시 첫해 한시 완화 방안 포함 (예시: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 제외)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 종속회사 제외	유지
4 면책 제도	면책 설계 예정, 단, 구체적인 설계안은 추후 예정	한시 포괄 면책(3년) + 상시 제도적 면책 병행	신설
5 스코프 3	공시대상별 3년 유예, 소기업(非고탄소 업종) 제외	공시대상별 3년 유예, 소기업(非고탄소 업종) 제외	유지
6 인증 의무화	자율 인증으로 시작, 단계적 의무화 '검토'	'30년 의무화 '확정', 금융당국이 중심이 되어 직역중립적인 제도 설계·운영	변경

7

02 국내 공시 로드맵 최종안 - [1] 공시 시기 및 대상

→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인 주요 코스피상장사가 공시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화 일정을 적극적으로 수정



※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 (연결공시 연착륙)
※ 기업 수는 FY25 자산·매출 기준 잠정치로, 실제 공시시점에는 달라질 수 있음 · '28~'29년 공시상황 평가 후 '30년 확대 확정

8

02 국내 공시 로드맵 최종안 - [2] 사업보고서 공시 및 면책

→ 사업보고서 공시로 전격 시행되는 만큼, 공시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 면책(Safe harbor)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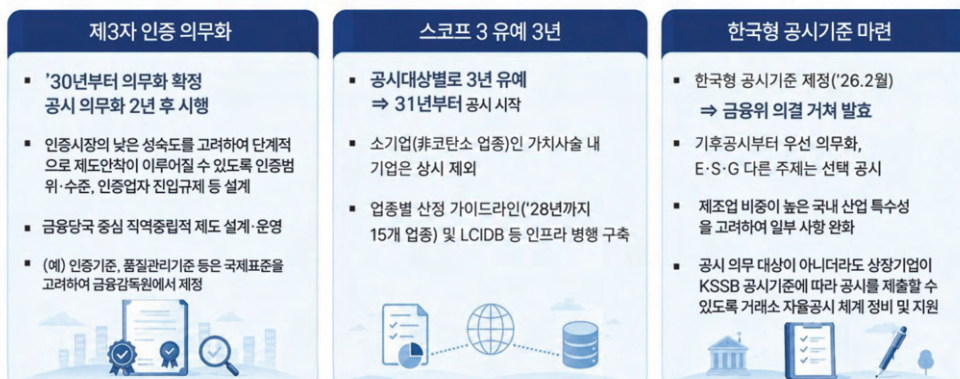


9

02 국내 공시 로드맵 최종안 - [3] 제 3자 인증 / 스코프 3 공시 / 한국형 공시기준

→

-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 의무화
- 배출량 산정 인프라 등 구축을 위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하는 의견수렴안 유지
-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한국형 공시기준을 제정



10

02 국내 공시 로드맵 최종안 - 향후 추진 계획

→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의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 가동



11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공시기준 핵심요소

→ 지속가능성 공시의 본질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01 거버넌스 - 의사결정 체계

-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 기구
 - 기후 관련 정보의 보고 방식 및 빈도
 - 목표 설정과 진척도를 감독하는 방법 등
- 경영진의 역할



02 전략 -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무에 미치는 영향
- 기후 회복력



03 위험관리 - 위험 및 기회 관리 체계

-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되는 범위와 방식



04 지표 및 목표 - 수립한 목표와 진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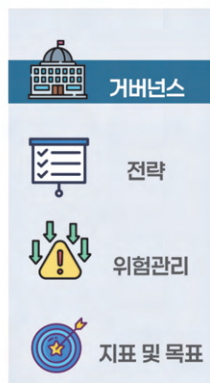
- 산업전반지표
 - ✓ 온실가스 배출량
 - ✓ 위험 및 기회 관련 사업활동 정보
 - ✓ 내부탄소가격(톤 당 가격 공시 선택)
 - ✓ 경영진 보상
- 산업기반지표(선택)
 - 기후 관련 목표

13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공시기준 핵심요소

→ KSSB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시할 정보

지속가능성 공시의 주요 내용 -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1.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 기구

- 내부 규정에 반영된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 기후 감독을 위한 역량 보유 여부
- 기후 관련 정보의 보고 방식 및 빈도
- 의사결정과정에 기후를 고려하는 방법
- 목표 설정과 진척도를 감독하는 방법

2. 경영진의 역할

- 기후 관리 역할의 위임 여부와 감독 방식
- 기후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와 조직 내 기능 간 연계

14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공시기준 핵심요소

→ KSSB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시할 정보

지속가능성 공시의 주요 내용 -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	
	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3.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위험 및 기회 식별, 위험의 분류 - 영향을 미치는 기간범위 - 기간범위를 정의한 방법과 이유	- 대응 계획(전환계획 포함) - 자원 조달 현황 및 계획 -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
	2.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4.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
	- 기업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5. 기후 회복력(기업의 적응 능력)
		- 경영진의 회복력 평가 결과 -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시점

15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공시기준 핵심요소

→ KSSB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시할 정보

지속가능성 공시의 주요 내용 -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	
	1.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정책	
	- 위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 시나리오 분석 사용 여부 - 위험의 성격, 발생가능성,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 - 위험 평가 절차의 변경 여부	
	2. 기후 관련 기회를 평가하는 정책	
	3.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방식	

16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공시기준 핵심요소**→ **KSSB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시할 정보**| **지속가능성 공시의 주요 내용 -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수립한 목표와 달성 성과			
		1. 산업전반지표	2. 산업기반지표 (선택)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 전환위험 관련 사업활동의 금액(비율) - 물리적 위험 관련 사업활동의 금액(비율) - 기회 관련 사업활동의 금액(비율) - 기후 관련 자본적 지출액 - 내부탄소가격 - 경영진 보상과의 연계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 예: 전력 집약도 물 소비량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
			3. 목표
			- 기후 관련 정량, 정성 목표 - 목표의 적용 범위와 기준 연도 - 주요 단계별 중간 목표 - 목표 변경 사유, 변경 전후 목표 비교 - 기업의 목표와 국제협약간의 관계

17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확인할 사항****오해 ①. 의무 공시 대상 기업만 준비하면 된다?**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은 이미 요구”

-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새로운 기준과 의사결정 수단**으로 자리매김
 - ✓ 글로벌 금융회사, 투자은행, 신용평가사 중심으로 상품개발 및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 중
 - ✓ 세계 3대 연기금(한국, 일본, 노르웨이)은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을 위해, 투자 대상 선택에 ESG 요소를 고려
 - ✓ 자산운용사(Black Rock, Vanguard)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결권 행사 지침에 반영
-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객사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
 - ✓ 글로벌 규제 대응(예: 공급망 실사)을 위해 협력사 대상 ESG 관리 및 데이터 요청 확대
 - ✓ ESG 관리 및 정보 제공 여부가 벤더 선정, 신규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증가

18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확인할 사항**

오해 ②. 지속가능성 공시는 ESG 팀만 대응하면 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제표와 함께 읽히는 정보”

- 투자자는 **재무제표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
 - ✓ 지속가능성 공시의 보고기업, 보고기간은 재무제표와 동일해야 함
 - ✓ 지속가능성 공시에 사용된 데이터 · 가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재무제표와 일관되어야 함
 - ✓ 정보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
- ESG 팀 · 재무팀 간 커뮤니케이션 등 **협업 필요**

19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확인할 사항**

오해 ③. 모든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정보를 다 공시해야 한다?!



“기업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공시”

- 기업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및 기회
 - ✓ ‘기업전망’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자본비용을 의미
 - ✓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에는 기업 특유 요인, 주요 이용자의 관점이 고려
- 식별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공시**
 - ✓ 정보를 누락, 잘못 기재,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
 - ✓ KSSB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20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확인할 사항****오해 ④. 기후 공시는 결국 탄소 공시다?**

“배출량은 공시가 요구되는 지표 중 하나일 뿐”

- 기후 공시는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넘어, **기후**에 대한 기업의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것임
 - ✓ 투자자는 기후 변화가 사업모형의 변화를 요구하는지, 기업이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함을 알고 있음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자연 · 사회 측면**과도 연결됨
 -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자연 사회적 요소를 통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역시 공시 대상에 해당
(예) 농산물 기업: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 공급망 차질 → 기업전망에 영향 | 물 관련 정보 공시
전력 · 발전 기업: 기후 전환 → 석탄 폐쇄 → 인력 재배치 → 규제 평판 위험 | 인력 · 공정전환 관련 정보 공시

21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확인할 사항****오해 ⑤. 데이터가 완벽해야만 공시할 수 있다?**

“합리적인 정보의 사용과 공시된 정보의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핵심”

-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
 - ✓ 보고일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음
- 수치 값의 완벽함 보다는, 그 **수치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
 - ✓ ‘정확성’은 사실 정보에 오류가 없고, 추정 값 · 예측 값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히며, 그 값을 도출한 과정과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
 - ✓ 수치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수반될 때, 추정 값 · 예측 값이 완벽하지 않아도 정보의 유용성이 훼손되지 않음
 - ✓ 추정 · 예측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수정은 오류가 아님

22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확인할 사항**

오해 ⑤. 데이터가 완벽해야만 공시할 수 있다?

[참고] 영국 Unilever 공시사례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Scope

Our sustainability statement is prepared on a consolidated basis, consistent with the scope and reporting period (1 January to 31 December 2025) of ou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llowing the demerger of our Ice Cream business on 6 December 2025, all territories and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the Ice Cream business have been treated as discontinued operations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a result, the sustainability statement focuses on our four continuing Business Groups (Beauty & Wellbeing, Personal Care, Home Care and Foods).

Upstream and downstream value chain

The scope of the sustainability statement extends to our upstream and downstream value chain, generally referred to as our business partner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nnected to Unilever's material impacts. Disclosures are limited to direct and indirect business relationships which are readily available.

Unilever's upstream value chain covers the procurement, manufacture and packaging for the manufacture and sale of our products. Our supply chain works with over 46,000 Tier 1 suppliers (those Unilever directly for goods and services) across more than 100 countries. We also consider subcontractors of our Tier 1 suppliers and where we outsource the manufacturing and packaging of (collaborative manufacturing) in our upstream value chain.

가치사슬 범위:

-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전체
- 정보 확보 가능한 범위 내 공시
- 공급망 규모 - 46,000개 이상 Tier1 공급업체(140개 이상)

추정치 및 불확실성:

- 일부 지표는 추정 사용
- 내부데이터/공급업체 인보이스/벤치마크/연구자료 등 사용
-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은 가정, 추정, 판단 근거 공개

Sources of estimations and outcome uncertainty

Metrics are reported based on the definitions in the ESRs, unless stated otherwise. Unilever-specific definitions are included where relevant. The data and assumptions used in the sustainability statement align with those used in the 2025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here metrics could not be directly measured, estimates have been prepared using internal and external data sources, including indirect sources such as supplier invoices, publicly available benchmarks or scientific research. For metrics with high measurement uncertainty, we have disclosed the sources of uncertainty and the key assumptions, approximations and judgements used in our estimations within the topical disclosures.

The sustainability statement was subject to external limited assurance by KPMG LLP in accordance with ISAE (UK) 3000.

23

03 기업 대응과 이행지원 – **금융위 로드맵 이행지원 방안**

 금융위 로드맵 중 '이행지원' 관련 발체	구분	주체	주요 내용
	 공시실무 지원	회계기준원·거래소·금감원	주요 7개 산업군 대표기업과 파일럿테스트 →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 및 공시보고서 등 파일럿테스트 결과를 공개 (①위험·기회 식별 ②재무적 영향 ③시나리오 분석 ④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부	1.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28년 공개 예정) 2.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플랫폼 구축
	 공급망 데이터	기후부	1. 스코프 3 업종별 산정 가이드라인('28년까지 15개 업종) 2. LCI DB 1,000개 구축
		산업부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 협력사 단일입력·다수대응(~'29년)
	 ESG 종합컨설팅	산업부·금융위 등	1. 공시대상 편입 예상 기업(연결자산 2~5조원) 컨설팅('29년까지) 2. 동반성장협약 확대(협력사 진단·컨설팅·저리자금)
	 공시정보 활용	국인연금 등	책임투자·기업과의 대화에 활용 확대·스튜어드십코드 반영·전환금융 심사 시 전환계획 정합성 활용

24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1부 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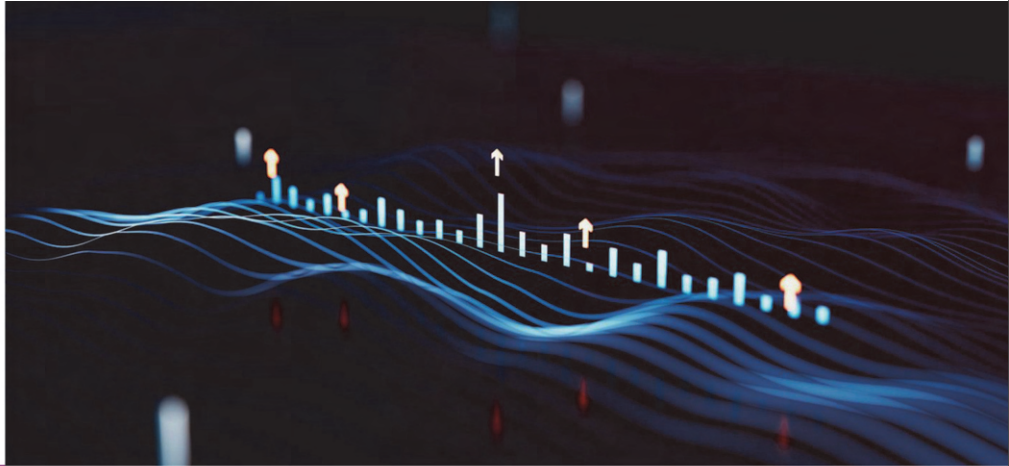
KSSB 확정과 EU 간소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U CSRD과 ESRS 간소화, 그리고 ESRS-TC 기업의 핵심 쟁점

정영일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EU CSRD와 ESRS 간소화, 그리고 ESRS-TC 기업의 핵심 쟁점

2026. 7. 30 | 법무법인(유) 세종 ESG 센터 센터장 정영일

목 차

- I.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정 현황
- II. ESRS 간소화
- III. ESRS-TC 논의 동향
- IV. 기업의 핵심 쟁점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I.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정 현황

1. CSRD 개요
2. 옴니버스 결과
3. ESRS 개정 동향

SHIN & KIM
법무법인(유한) 세종

1. CSRD 개요

CSRD 구조

- Directive (EU) 2022/2464 · 3개 기존 법률 개정 + 보고·기준·인증 신규 조항 도입

개정 대상 3개 법률

1. 회계지침 (Accounting Dir.)

Directive 2013/34/EU - 본체, CSRD 신규 조항 대부분이 여기 삽입됨

삽입: Art. 19a · 29a · 29b · 29c · 29d · 40a

2. 투명성지침 (Transparency Dir.)

Directive 2004/109/EC - EU 규제시장 상장사 정기 공시 체계

개정: Art. 4(5) · 신설 Art. 28d (ESMA 감독)

3. 감사 프레임워크 (Audit Framework)

Directive 2006/43/EC + Regulation 537/2014 - 법정감사 독립성

개정: Art. 26a · 34 - 지속가능성 인증 도입

신규 도입 핵심 조항

● 보고 의무 (Reporting)

회계지침 신규 삽입 조항

- Art. 19a 개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Individual statement)
- Art. 29a 연결 그룹 지속가능성 보고 (Consolidated statement)
- Art. 40a ★ 제3국 그룹 보고 — 한국 모회사 적용 경로

● 보고 기준 (Standards)

EFRAG 자문 → Delegated Act

- Art. 29b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채택 근거
- Art. 29c 상장 SME 단순화 기준 (LSME ESRS)

● 디지털 포맷 (Digital Tagging)

ESEF · XBRL 단일 포맷

- Art. 29d XHTML 전자보고 + 디지털 태깅 의무

● 인증 (Assurance)

감사지침 개정 — 법정감사인 또는 독립 인증인

- 감사지침 53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인증 의견 표명 의무
L Limited assurance 적용 · Reasonable 단계 전환은 Omnibus 후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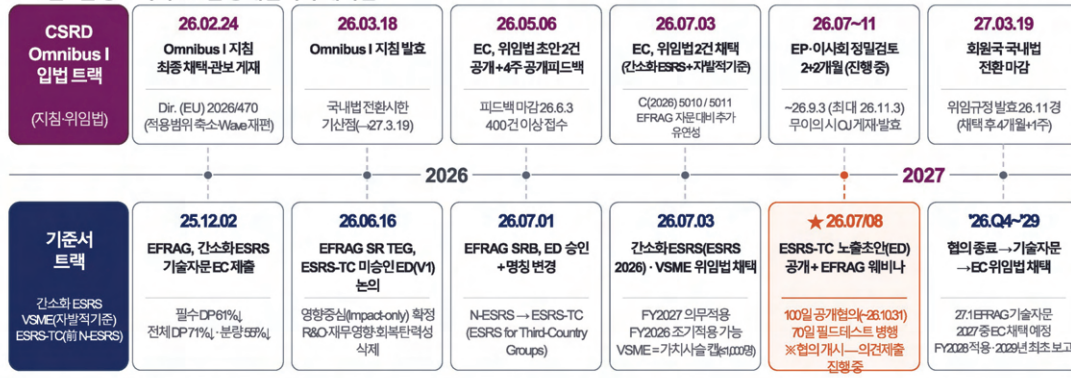
1. CSRD 개요

SHIN & KIM
법무법인(유한) 씨엘케이

EU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일정

I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정 현황

- 올니버스 I이 2026년 3월 발효되었으며, 관련하여 간소화된 ERSR는 2026년 7월 3일 위임법으로 채택됨. ERSR-TC 노출초안은 7월/8월 공표되어 100일 공개협의가 개시됨



EU 기준서는 「간소화 ERSR(확정) → VSME(확정) → ERSR-TC(협의 착수)」 순으로 단계 확정 중 — EU 자회사·지점 보유 국내 그룹은 ① FY2027 자회사 보고 ② 가치사슬 캡 대응 ③ ERSR-TC 100일 협의 의견제출을 병행 준비할 시점

Ref. Dir. (EU) 2026/470 (Omnibus I) 2026.2.24; C(2026) 5010/5011 (2026.7.3 위임법); 간소화 ERSR(자발적기준) EFRAG SRB 2026.7.1 (ESRS-TC ED 승인); EFRAG SR TEG 2026.6.16; ERSR-TC Cover Note 54-7; EFRAG ERSR for Third-Country Undertakings 웨비나 안. 2026.7.22; 적용범위 회계지침 제40a조 EU 승인을 45% + EU 자회사·지점 2% 대상 약 1,000사

5

2. 올니버스 결과

SHIN & KIM
법무법인(유한) 씨엘케이

올니버스 I 결과 > CSRD

I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정 현황

- Directive (EU) 2026/470 (Omnibus I, 2026.3.18 발효) · CSRD 원안(Dir. 2022/2464) 대비 핵심 변경사항

핵심 변화

1. 적용 범위 축소

CSRD 인적 적용범위(personal scope) 임계치를 회계지침 large undertaking 정의와 분리하여 신설

EU 적용 기업 ~80% 감축 (약 50,000 → 10,000사)

2. 적용 시기 연기(Stop-the-Clock)

Dir. (EU) 2025/794 (2025.4) 별도 입법 — Wave 2/3 적용을 일괄 2년 연기. Omnibus I 본법(2026/470)과 함께 적용

Wave 2: FY2025 → FY2027 · 상장(SME) 의무 폐지

3. Value Chain Cap 명문화

지속가능성 보고 목적으로, 보고 대상 기업이 가치사슬 내 보호대상 기업(1,000명 미만, "Protected Undertakings")에게 VSME 자발적 기준(Art. 29ca)을 초과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

공급망 SME 보호 · ERSR 1.567 조항 신설

핵심 조항 관련

● 보고 의무 (Reporting)

Accounting Dir. 적용 임계 / 제3국

Art. 19a/29a 대규모 정의 임계치 상향 → 1,000인+ AND 순매출 €650M+

Art. 40a ★ 제3국 그룹 EU 매출 임계 €150M → €650M (3배 상향), 자회사/지점 임계치 €10M → €200M (20배)

● 보고 기준 (Standards)

EFRAG 자문 → Delegated Act

Art. 29b Sector-specific 기준 mandate 폐지 (sector-agnostic만 유지) — EFRAG sector standards 작업 중단

Art. 29c 상장 SME 의무 (SME ERSR) 폐지 → VSME 기준(채택시한: 2026년 7월 19일안) 활용으로 전환

● 디지털 포맷 (Digital Tagging)

ESEF · XBRL 단일 포맷

Art. 29d XHTML-디지털 태그 의무는 유지, 단 적용 시점 조정 가능성 (taxonomy 발행 후 별도 위임)

● 인증 (Assurance)

감사지침 개정 — 법정감사인 또는 독립 인증인

감사지침 §34 Limited assurance 유지 — Reasonable assurance 단계 전환 의무 폐지 (EC 권한 삭제)

Audit Dir. 개정 EC가 2027.7.1까지 sector-agnostic 인증 기준을 위임법으로 채택 (시한 명문화)

6

3. ERS 개정 동향

SHIN & KIM
인수합병·재무·세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종류

L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정 현황

- ERS는 부문-무관, 부문-특유, SME, Non-EU 기업용으로 개발되고 있음

EFrag의 ERS 관련 Workstreams*



ESRS 구분 및 제정 일정

구분		내용	도입(예정)일자(과거)	시용니버스/영향(현재)
1	부문-무관 sector-agnostic	일반 기준 2개 & 주제(Topical) 기준 10개	2023년 7월 채택	간소화 2026.7.3 위임법령 채택
2	부문-특류 sector-specific	41개 부문	2026년 6월 채택 예정	폐지
3 SME	상장 중소기업 Listed SMEs, LSME	일반 기준 & 주제별 기준	2026년 1월 발효 위임입법	폐지
	자발적 중소기업 Voluntary SMEs, VSME	기본 모듈 & 종합 모듈	기업들의 자발적 도입	2026.7.3 위임법령 채택
4	Non-EU 기업	일반 기준 & 주제별 기준	2026년 6월 채택 예정	2027 중반 위임법령 채택 예정

* <https://www.efrag.org/en/sustainability-reporting/esrs-workstreams>

7

II. ESRS 간소화

1. 개정의 배경과 적용 일정
2. 간소화 방향 및 결과
3. 주제별 기준 변화

SHIN & KIM
인수합병·재무·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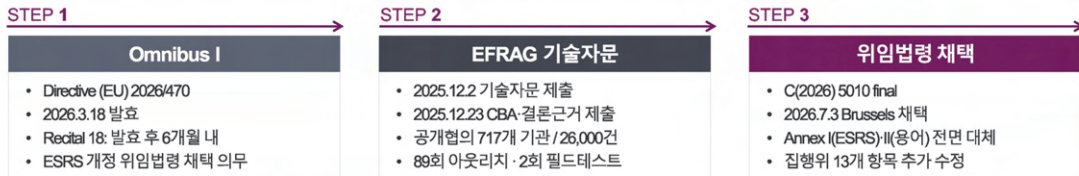
1. 개정의 배경과 적용 일정

Omnibus I → 위임법령

SHIN & KIM
법무법인(유한)·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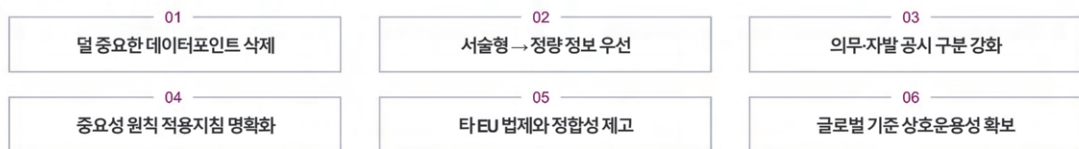
II. ESRS 간소화

- 본 위임법령은 2023/2772의 Annex I-II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sector-agnostic ESRS 전체를 재작성함



Recital (18)이 지시한 6대 개정 방향

위임법령은 이를 그대로 이행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C(2026) 5010 final — Explanatory Memorandum"(2026), pp.1-3; SWD(2026) 500 final, pp.3-8

9

4

1. 개정의 배경과 적용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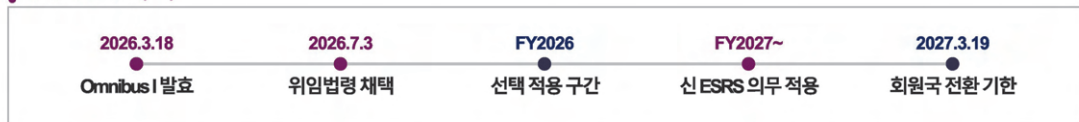
FY2027 의무 적용, FY2026은 기업의 「선택」 구간

SHIN & KIM
법무법인(유한)·사무

II. ESRS 간소화

- FY2026에 대해 기업은 ①현행 ESRS 유지 ②신 ESRS 초기 전면 적용 ③현행 ESRS + 8개 릴리프 선별 적용 중 택일하고, 적용 버전을 공시해야 함(제2조)

규제 타임라인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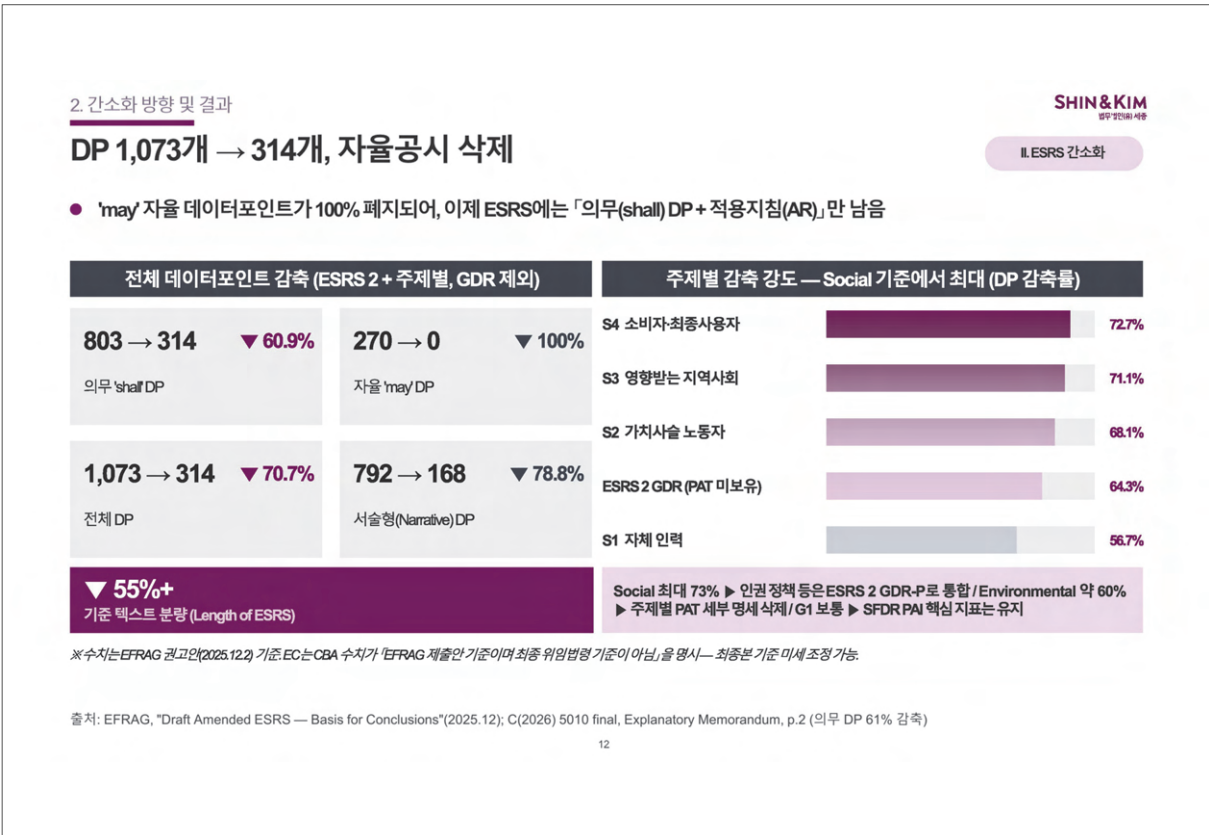
FY2026 선택지 (제2조)		주요 Phase-in (ESRS 1 ¶125-127) — 생략 가능 범위	
①	현행 ESRS 유지 2023/2772 (2025/1416 개정본)	E4·S2·S3·S4 전체 DR	Wave1 ~FY2026 · Other ~FY2028
②	신 ESRS 전면 조기적용 본 위임법령 Annex I	S1-87(비EEA) S1-10-14	Wave1 ~FY2026 · Other ~FY2027
③	현행 + 8개 릴리프 선별 ESRS 1 ¶27-32-33-74-75-90-91-92-106-110	예상 재무영향 (정성+정량)	Wave1 ~FY2026 · Other ~FY2027
		예상 재무영향 (정량)	~FY2029 (양 트랙 동일)
		SoC 정량/SMO(물품사용자)	~FY2029 / ~FY2027

※ 초기 자발적 적용은 Phase-in 기한점을 촉발하지 않음 (ESRS 1 ¶121). Wave 1 = FY2024~2026 개시 보고의무 기입 / Other = FY2027 이후 개시 기업(¶122). ~FYX' = FYX년까지 생략 가능(조문 'prior to FY X+1'은 해당 연도 미포함). ¶126(임계 미조과 Wave 1)은 ~FY2026 전 주제기존 생략 가능.

출처: European Commission, C(2026) 5010 final, 제2조-제3조; Annex I, ESRS 1 ¶121-127

10

4



2. 간소화 방향 및 결과

ESRS 2 GDR 신설

SHIN & KIM
법무법인·세무법인

II. ESRS 간소화

- 이제 모든 주제별 기준의 정책·조치·목표 DR은 ESRS 2의 GDR-P/GDR-A/GDR-T를 「참조」할 뿐이며, 개별 기준은 주제 고유의 추가 정보만 규정함

전체 데이터포인트 감축 (ESRS 2 + 주제별, GDR 제외)



각 주제별 기준 정책·조치·목표 DR = "ESRS 2 GDR-P/A/T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예: E1-4 → GDR-P, E1-5 → GDR-A, E1-6 → GDR-T). 주제 고유 정보만 추가 규정.

출처: European Commission, C(2026) 5010 final, Annex I — ESRS 1 목차 및 ESRS 2 41-49 (GDR-P/A/M/T)

13

2. 간소화 방향 및 결과

MDR → GDR 의미

SHIN & KIM
법무법인·세무법인

II. ESRS 간소화

- 주제별 기준에 추가 PAT 데이터포인트가 남지 않으므로, GDR이 정책·조치·목표 보고의 「유일한 참조점」이 됨

BEFORE — ESRS Set 1 (2023/2772)	AFTER — Amended ESRS (2026)
ESRS 2 · MDR (Minimum Disclosure Requirements) MDR-P 6 / MDR-A 12 / MDR-T 13 / MDR-M 3 'shall'	ESRS 2 · GDR (General Disclosure Requirements) GDR-P 4 / GDR-A 10 / GDR-T 11 / GDR-M 3 'shall'
Appendix C 주제별 기준에 적용되는 AR·DR을 별도 규정	Appendix C 폐지 일부만 별도 DR로 흡수 (예: E1-3 기후 회복력)
주제 기준 (E1-E5, S1-S4, G1) 각 주제마다 PAT별 세부 'shall' DP를 중복 명세	주제 기준 (간소화) PAT 세부 명세 → 주제 고유의 essential 항목만 잔존
실무 결과 Preparer-Auditor 간 해석 차이 → 과도한 문서화 부담	PAT 미보유 시 사유·도입 timeline 공시 의무 폐지 (no behaviour mandated)

중복 제거 효과: 주제별 기준에서 62개 DP가 「중복 제거 목적만으로」 삭제
- 전체 감축분의 8.2% | PATM 정보의 집계 수준(IRO 단위 / 주제 단위) 유연화

출처: EFRAG, "Draft Amended ESRS — Basis for Conclusions"(2025.12); C(2026) 5010 final, Annex I — ESRS 2 41-52 (GDR-P/A/M/T)

14

2. 간소화 방향 및 결과

SHIN & KIM
신우진&김세영

II. ERSR 간소화

중요성 평가: Top-down 접근 명문화

- "보고할 필요 없다(is not required to)"가 "보고해서는 안 된다(shall not)"로 바뀜. 비중요 정보 과다 공시 관행을 규범적으로 차단함.

기존 ERSR (2023) — 실무 관행	개정 ERSR (2026) — 무엇이 달라지는가
개별 IRO 단위 상향식(bottom-up) 전수 평가 관행	Top-down 접근 명문화 — 주제(topic) 수준에서 중요성 결론 도출 가능, 개별 IRO 평가는 원칙적으로 불요 (¶27, AR 9)
비중요 정보 "보고 불요" → 방어적 과다 공시 유발	비중요 정보는 "보고해서는 안 됨"(shall not) — 보충정보(82) 등 명시적 예외에 한정 (¶24)
'matters' · 'material topics' 용어 혼용 → 해석 혼란	용어 정비: 주제는 관련 IRO가 material일 때 보고 / sub-sub-topic 단계 삭제, 주제 리스트는 Appendix A(예시)로 이전
공정한 표시를 데이터포인트 단위로 해석 → 감사인 마찰	공정한 표시는 「진술서 전체」 수준에서 판단, 개별 데이터포인트에 적용되지 않음 (¶19-21, AR 6)
가치사슬 IRO 평가에 협력사 직접 데이터 요구	지역산업 평균 데이터, 일반 공개정보만으로 가치사슬 중요성 평가 가능 (¶33) / 정량 스코어링 불요 (AR 13)

2단계 절차 (¶25): ① 중요 IRO와 연관된 주제(topic) 식별
→ ② 해당 주제별로 보고할 정보 결정 | ERSR 2의 DR은 본질적으로 모든 기업에 중요 (AR 12)

출처: European Commission, C(2026) 5010 final, Annex I — ERSR 1 ¶19-33 및 AR 6-13(AR 17 자산운용)·AR 37(가치사슬); Explanatory Memorandum, pp. 3-4

15

2. 간소화 방향 및 결과

SHIN & KIM
신우진&김세영

II. ERSR 간소화

네 개의 안전장치

- 릴리프 사용은 공정한 표시를 훼손하지 않으나(AR 6), BP-1-BP-2를 통해 사용 사실·범위 한계·개선 계획을 공시할 의무가 따름

Ch. 5.4	인수·처분 릴리프 중대한 인수·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정보 포함에 대한 완화	ERSR 1 ¶74-75
Ch. 7.3	작성 릴리프(3종) ① 비중요 활동을 지표 산정에서 제외 (¶80) ② 신뢰 가능 데이터 부족 시 부분 보고 범위 (¶81) — 단, E1-8 GHG 배출에는 미적용 (IFRS S2 상호운용성 보존) ③ 운영통제 없는 공동운영을 환경지표(E2-E5)에서 제외 (¶82)	ERSR 1 ¶90-92
Ch. 7.4	과도한 비용·노력(Undue cost or effort) IRO 식별, 가치사슬 범위 설정, 지표 작성, 재무영향 보고 전반에 적용 (IFRS S1 정렬 + 확장). 비용과 이용자 편의의 균형적 고려 · 매 보고기간 재평가	ERSR 1 ¶93-95
Ch. 7.7	★ 정보 생략(Omission) — 최종본 신규 도입 ① 상업적 지위 심각 침해 ② 영업비밀(Trade Secrets Directive) ③ 기밀정보 ④ 기타 EU·국내법상 보호 정보 → 각 생략 사실 공시 + 매 보고일 재평가 / 예상 재무영향에도 적용	ERSR 1 ¶100-101

공시 의무 연동: BP-1 — 적용한 릴리프·옵션 및 관련 정보
| BP-2 — 사용한 Phase-in 및 해당 주제의 중요성 평가 결과

출처: European Commission, C(2026) 5010 final, Annex I — ERSR 1 Ch. 5.4-7.3-7.4-7.7 (¶74-101); ERSR 2 BP-1-BP-2 및 AR 2

16

3. 주제별 기준 변화

E1

SHIN & KIM

영양전문가·세무

II. ESRs 간소화

- 집행위는 EFRAG의 '재무통제 일원화' 권고를 뒤집고 재무통제-운영통제 중 선택을 허용했음. 기존 운영통제 기업의 Scope 1-2 재산정 부담이 사라짐

개정 E1의 DR 구성 (11개 DR)		핵심 변경 영역 — 기존(2023) ▶ 개정(2026)	
E1-1	기후변화 완화 전환계획	GHG 배출 경계 운영통제 기반 기본	★ 재무통제 또는 운영통제 「선택」 허용 (EFRAG 초안의 재무통제 일원화를 집행위가 완화)
E1-2	★ 신설 기후위험 식별·시나리오 분석		
E1-3	기후 회복력	전환계획 (E1-1) 1.5°C compatibility 정의 모호	★ 1.5°C 미부합 목표 보고 시 그 사실을 투명 공시 핵심 가정·의존성 DP 산출 (IFRS S2.14(a)(iv) 정렬) 전환계획 미수립 시에도 그 사실 공시의무 유지
E1-4~6	정책·조치·목표		
E1-7	에너지 소비·믹스	기후 회복력 (E1-3) 정성·정량, 시나리오 분석 권장 수준 불명확	Risks only · 정성 한정. 시나리오 분석은 의무 아님 (IFRS S2는 의무 → 의도적 deviation 잔존)
E1-8	Gross Scope 1-2-3 GHG		
E1-9	GHG 제거·탄소크레딧	정책·실행 (E1-4/5) Sub-topic별 정책 공시/ Taxonomy KPI 연계	GDR-P·GDR-A 참조로 단순화 EU Taxonomy 연계 삭제 → 양 보고체계 독립 운영
E1-10	내부 탄소가격		
E1-11	예상 재무영향		

※ E1-8 Gross Scope 1-2-3에는 191 부분보고 클리프가 적용되지 않음 — Scope 3 impracticable 면제도 미도입 (IFRS S2 상호운용성 보존 목적).

출처: C(2026) 5010 final, Annex I — ESRs E1 (¶11-42) 및 Explanatory Memorandum p.3 (GHG 경계 유연성); ESRs 1 ¶91

17

3. 주제별 기준 변화

E2~E5

SHIN & KIM

영양전문가·세무

II. ESRs 간소화

- 환경 기준의 감축은 단순 분량 축소가 아니라, ecological threshold 등 「과학 기반 평가 요건의 완화」라는 질적 변화를 포함함

E2-E5 공통 변경 패턴

① Mitigation hierarchy 자율공시 전면 폐지 ② Site-level 자율공시 삭제 (ESRS 1 Ch.3.3.2 집계·분해 원칙으로 참조) ③ 목표 DR은 GDR-T 참조로 축소 — ecological threshold 등 deprioritized ④ EU Taxonomy 연계 DP 다수 삭제 ⑤ 주제별 예상 재무영향 DR 삭제 → ESRs 2 ¶27 / SBM-3에서 일괄 처리 (E1-11만 별도 존치)

E2 Pollution 오염	E3 Water 물	E4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E5 Circular Economy 자원·순환경제
★ 미세플라스틱 → 1차(primary) 미세 플라스틱만 한정 ★ 오염물질 중요성 = 사업활동·업종 고려한 경영진 판단 기반 ★ SVHC — 물품(article) 사용자 요건 완화 + Phase-in • E-PRTR 의무 참조 삭제 (non-EU 적용 곤란 반영) • E2-4 pollutants → 'material' emissions로 단순화	★ 명칭 변경: Water and Marine Resources → Water • Marine 자원(어류·골재) → E5 / Marine 생물다양성 → E4 • Seawater 사용(담수화 등)만 E3에 잔존 • Policy 일부 'may' DP → 'shall' 격상 (water stress 지역) • DR 4개로 축소 (E3-1 정책 ~ E3-4 물 지표)	• E4-1 생물다양성 전환계획 (GBF 연계) → Strategy 영역 • Biodiversity-sensitive areas 정책 DP 자율 → 필수(material 시) • LEAP 접근법은 'valuable input' (mandatory 아님) • Threatened species / site-level voluntary 공시 삭제 • 정의 정비: ecosystem services, nature 등	• Marine resources를 자원 유입(E5-4)으로 통합 • 신규 'shall' DP — E5-4 핵심원재료 중 CRM-SRM 특정 (Reg. 2024/1252) • Circular economy principles, key materials 등 정의 신설 • Resource inflows / outflows 산정 방법 단순화 • E5-1-3 정책·조치·목표 → GDR 참조

★ = 집행위가 EFRAG 기술자문에서 추가로 수정한 항목 (최종 위임법령에서 확정)

출처: C(2026) 5010 final, Annex I — ESRs E2-E3-E4-E5(E5-4 ¶13(a)-AR 2) 및 Explanatory Memorandum pp.3-4; EFRAG Basis for Conclusions (2025.12)

18

3. 주제별 기준 변화

S1~S4

SHIN & KIM
상무법인신영

II. ESRS 간소화

- 'severe human rights incidents' 개념이 삭제되고 'substantiated' 사례만 보고하게 되어, 인권 공시의 판단 기준이 실제적 입증(substantiation)으로 이동함

▼ 56.7%

S1

자체 인력

DP 감축·분량 -68%

▼ 68.1%

S2

가치사슬 노동자

DP 감축·분량 -72%

▼ 71.1%

S3

영향받는 지역사회

DP 감축·분량 -75%

▼ 72.7%

S4

소비자·최종사용자

DP 감축·분량 -77%

S1~S4 공통 주요 변경

1 DR 1~4 narrative 통합·간소화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고충처리 실행 목표 narrative DR을 principles-based로 전환(>70% 감축). 인권 정책 commitments 등 SFDR PAI 관련 8개 DP는 ESRS 2 GDR-P의 'human rights policy'로 통합

2 SBM-2/SBM-3 세부 명세 삭제

S1~S4에서 ESRS 2 SBM-2/SBM-3 관련 narrative 삭제. 단, ESRS 2 IRO-2의 강제노동·아동 노동 노출도 지표는 유지

3 ★ 인권 차별 사건 기준 변경(S1-16 등)

'severe human rights incidents' 개념 삭제 → 'substantiated' 사례만 보고 (S1~S4 공통). 차별 사건도 substantiation 요건 'initiated' → 'ongoing' 사법·비사법 절차로 한정

4 S1 지표 정의·산식 명확화

적정임금(S1-9, 필드테스트 20개사 반영), 보건안전(S1-13), 성별임금격차 등 기준 산식 추가. S1-6 임계치를 'top 10 countries'로 변경(기준: 직원 10% 국가, 50명 de minimis 유지). S1-13 'days lost' 산정 시 사망 관련 제외

5 non-employees 범위 명확화·기준 간 상호작용

Self-employed, 파견인력 등 'non-employee in own workforce' 범위 예시 명문화. 환경↔사회 기준 간 상호작용 예시 제시(공장전환, 오염·건강 영향 등) → 공시 누락 방지

출처: C(2026) 5010 final, Annex I — ESRS S1(¶1–43) S2–S3 S4 및 Explanatory Memorandum p.4; EFRAG Basis for Conclusions (2025.12)

19

3. 주제별 기준 변화

G1/상호운용성

SHIN & KIM
상무법인신영

II. ESRS 간소화

- SFDR PAI 연계 핵심 지표(부패방지 정책·내부고발자 보호·유죄판결·과징금)는 그대로 유지됨

ESRS G1 · Business Conduct	IFRS S1 · S2 상호운용성 (Lever 6)
G1-1 정책 (Policies) Corporate culture,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세부 narrative 'shall' DP 삭제 → GDR-P 참조. 단, 부패방지 정책 유무,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유무, 고위험 직무는 존치(SFDR PAI #15-#6)	✓ Fair presentation IFRS S1과 동일하게 ESRS = fair presentation framework 명시
G1-2 조치 (Actions) 부패·뇌물 위반 대응 조치 단순화 — SFDR PAI Table #3 핵심 지표만 유지	✓ GHG 경계 ★ 재무통제/운영통제 선택 허용 (GHG Protocol 양립)
G1-4 유죄판결·과징금 부패방지 위반 유죄·과징금 지표 유지 (SFDR PAI #17, Table #3)	✓ 재무영향 릴리프 Undue cost or effort + range 공시 허용 (IFRS S1/S2 도입)
G1-5 정치적 영향력 로비 활동 metrics 유지, narrative 축소·정의 정비	✓ 산업별 가이드 SASB Standards · IFRS industry guidance를 'may consider'로 영구 참조
G1-6 지급 관행 (SME) SME 대상 결제 관행 지표 유지 — EU Late Payment Directive 연계 명확화	✓ 기후 회복력 IFRS S2.22 wording 정렬 (uncertainty 표현 등)
	✓ 전환계획 핵심 가장 의존성 DP 산식 (IFRS S2.14(a)(iv) 정렬)
	1 잔존 차이 시나리오 분석 의무 아님 (IFRS S2는 의무) / Scope 3 impracticable relief 미도입

출처: C(2026) 5010 final, Annex I — ESRS G1(¶6–43); Explanatory Memorandum p.3; EFRAG, Explanatory Note on Art. 29b(5) (2025.12)

20

III. ESRS-TC 논의 동향

1. 개요 및 진행 경과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3. 주제 기준 차이와 대응

SHIN & KIM
법무법인(유한) 세종

1. 개요 및 진행 경과

적용 대상

- ESRS-TC의 보고 대상은 EU 자회사·지점이 아니라 「제3국 최종모회사의 그룹 전체」이며, 공시 의무자는 EU 자회사·지점임

적용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ESRS-TC 보고 의무 발생 (ESRS-TC 1 ¶6A)

① 최종모회사	② 그룹 EU 매출	③ EU 거점
제3국(비EU)법률의 규율을 받는 최종모회사	그룹(또는 개별)기준 EU순매출액 > EUR400m (직전2개 연속사업연도)	EU자회사또는지점의 순매출액 > EUR200m (직전사업연도)

면제 경로 (ESRS-TC 1 ¶2A / Art. 40a(2))

최종모회사가 Full ESRS 또는 동등 기준으로 그룹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검증·공시하면

→ EU 자회사·지점은 ESRS-TC 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CSRD 제19a·29a조상 EU 자회사 면제(subsidiary exemption)는 모회사가 Full ESRS를 적용한 경우에만 인정 (ESRS-TC 적용만으로는 불가)

⇒ 「ESRS-TC 개별보고 vs. Full ESRS 글로벌 단일보고」의 전략적 선택이 최초 의사결정 지점

적용대상 규모 (EFRAG 추정)

약 **1,200**

개비트그룹 (Omnibus I 이전 약 10,000개)

본국(최종모회사 소재지) 분포 추정

미국	350~450
영국	150~200
스위스	100~150
일본	100~150

※한국 그룹도 EU 매출 요건 충족시 적용대상 — 공식 리스트는 부존재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 Unapproved V1"(2026.6), ESRS-TC 1 ¶1A·2A·6A-6E; EFRAG, "Cover Note: ESRS-TC"(Paper 06-00, 2026.6.16), ¶4-6; 적용대상 추정치는 EFRAG SRB(2026.6.3) 세션 자료

1. 개요 및 진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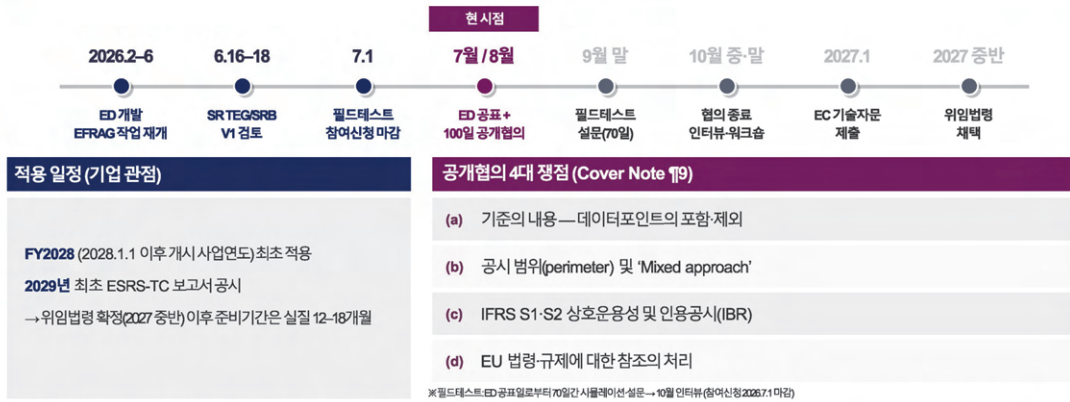
2026.7월 현재

SHIN & KIM
신우진&김지영

III. ERSR-TC 논의 동향

- ED는 2026년 7월/8월 공표되어 100일 공개협약이 개시될 예정임. 의견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말이며, EFRAG SRB는 Mixed approach에 대한 우려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ED를 승인함(2026.7.1)

EFRAG Due Process — 2026 · 2027



출처: EFRAG, "Cover Note: ERSR-TC"(Paper 06-00, 2026.6.16), 117-10; EFRAG, "EFRAG resumed work on the ERSR-TC..."(2026.6); Cleary Gottlieb, "EU Policy and Regulation Update"(2026.7.15) — SRB 조건부 승인 ED 공표일

23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RSR 대비

ERSR-TC : 간소화 ERSR - 재무 관점 + 역외적용 장치

SHIN & KIM
신우진&김지영

III. ERSR-TC 논의 동향

- ERSR-TC는 간소화 ERSR의 구조-용어를 그대로 승계하되, 재무 관점을 제거하고 제3국 그룹에 적용하기 위한 4개의 장치(보고범위·보고주체·법령참조·인용공시)를 추가함

구분	간소화 ERSR (C(2026) 5010, FY2027~)	ERSR-TC ED V1 (FY2028~)
① 중요성	이중 중요성(영향+재무)	영향(Impact) 중요성 단일 — 재무 중요성 철폐(322) 및 145-50 삭제
② 보고범위	재무제표 연결범위 = 지속가능성 보고범위	원칙: 제3국 최종회사 그룹 전체 / 예외: 기후 외 주제는 EU 관련 영향으로 한정 가능 (Mixed, 118B-18E)
③ 보고주체-공시	EU 기업이 자신의 경영보고서에 공시	모회사가 정보 제공 → EU 자회사 지점이 별도 보고서로 공시 + 검증의견 첨부(116A-6D)
④ 삭제 DR	SBM-3 재무효과 E1-11(AFE)·회복탄력성-의존도 유지	리스크/기회·재무효과·회복탄력성-의존도 관련 DR 전면 삭제, IRO-1/2 → I-1/I-2로 개칭
⑤ EU 법령 참조	EU 법령(EU ETS-SFDR-CSDDD 등) 직접 참조	역외 적용을 위해 국제기준·현지법 대체 및 근사치(estimation) 허용 — 그 한계를 BP-1에서 설명
⑥ 경과-인용공시	Wave 별 차등 phase-in	단일 phase-in + 제3국 보고서의 '실질적 부분' 인용공시 허용(1120A-B)

핵심: 구조(GDR 아키텍처·주제기준 12종)는 동일
→ 간소화 ERSR 대응 역량은 그대로 재사용 가능하나, 「영향 관점」과 「범위 판단」은 새로 설계해야 한다.

출처: EFRAG, "ERSR-TC Unapproved ED V1 — Markup vs Simplified ERSR of 6 May 2026"(2026.6) 전반; ERSR-TC 1 112-6A-6E-18A-18E-37-45-50(Deleted)-117-121

24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SHIN & KIM
신원컨설팅

① 영향(Impact) 단일 중요성

III. ESRS-TC 논의 동향

- 재무 중요성 측이 삭제되면서,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영향(impact)도 반드시 식별·공시해야 함(AR 17A)

중요성 구조의 전환



AR 17A—실무상 핵심 함정

이미 이중 중요성 평가를 수행한 기업은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재무성과재무상태현금흐름·자본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향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존 ESRS 중요성 평가 결과를 그대로 유용(流用)할 수 없음.

간소화 ESRS 대비 삭제·개정 항목

항목	ESRS-TC에서의 처리
ESRS 1 §3.2.2 재무 중요성 평가 (§45-50)	Deleted
ESRS 2 SBM-3 ¶27 예상 재무효과(AFE)	삭제 (재무효과 공시 없음)
ESRS E1-11 물리적·전환 리스크 재무효과	삭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존도(dependencies)	삭제
IRO-1/IRO-2	I1/I2로 개정 (Impact 전용)
질적특성 QC1 'double materiality'	'Impact materiality'로 대체

유지되는 것: GDR·PI/AMT 아키텍처, 주제기준 12중 체계, 실사(due diligence) 기반 영향 식별, 이해관계자 참여, 가치사슬 포함 원칙 — 간소화 ESRS 대응 산출물의 상당 부분은 재사용 가능함

출처: EFRAG, "ESRS-TC ED V1 — Markup vs Simplified ESRS"(2026.6), ESRS-TC 1 ¶2-32-37-45-50(Deleted), QC1, AR 17A, ESRS-TC 2 목차(i-1/i-2)

25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SHIN & KIM
신원컨설팅

왜 영향(Impact)만인가

III. ESRS-TC 논의 동향

- 회계지침 제40a·40b조는 제3국 그룹에 대해 「영향(impacts) 정보」만을 위임했음
- EU는 비상장 제3국 모회사의 리스크·기회를 공시하게 할 규제 관할을 갖지 않음

3단계

① 위임의 한계 — Level 1이 「영향」만 요구

회계지침 제40a조: 제3국 그룹은 「지속가능성 영향」에 대해 보고/제40b조의 위임도 그 영향 정보를 특정하는 기준에 한정.
집행위 CSRD FAQ(2024.8): 19a·29a에서 요구되는 회복탄력성·회리·리스크 정보는 40a 보고서에 요구되지 않으며, Taxonomy 제8조 공시도 제외된다.

② 규제 관할의 근거 — 투자자 보호가 아닌 「책임성」

적용대상은 EU 규제시장 「비상장」 제3국 모회사(상장 시 Transparency Directive → Full ESRS). → EU는 투자자 보호 관할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정당화 가능한 것은 EU 시장 접근에 따른 외부효과 책임성+공정경쟁(level playing field)뿐. Mixed approach(EU 관련 영향의 근거도 동일하다).

③ ISSB와의 분업 — 중복 회피

IFRS S1·S2 = 리스크·기회/ESRS-TC = 영향. 대상 그룹(美·英·스위스 등)은 자국 제도 ISSB로 R&O를 이미 보고 중.
→ R&O 재요구는 순수 중복이며, 영향(impact)은 ISSB가 다루지 않는 유일한 공백. 인용공시(IBC) 확대(¶117-120B)도 같은 논리의 귀결.

규제 정당성의 구조 — ESRS vs ESRS-TC

구분	ESRS (19a·29a)	ESRS-TC (40a)
규제 연결고리	EU 법인격·EU 상장	EU 시장 접근 (EU 매출 450m)
대상	EU 기업(상장·비상장)	비상장 제3국 모회사
보호 범위	투자자 보호 + 외부효과	외부효과 책임성 + 공정경쟁
중요성	이중(영향 + 재무)	영향 단일
Taxonomy 제8조	적용	미적용

세 가지 유의사항: 「금지」가 아니라 「강제하지 않을 뿐」

- AR 17A는 「영향은 리스크·기회를 발생시킨다」는 전제를 유지 — 자발적 R&O 공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ESRS-TC 1 ¶4: 투자자·대주는 여전히 primary user — 「영향정보도 투자자에게 유용하다」는 EU의 일관된 입장
- 이중 중요성은 「면제의 대가」 — EU 자회사 면제(19a·29a)는 모회사가 제29b조 Full ESRS를 적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ESRS-TC로는 불가

출처: EFRAG, "Cover Note: ESRS-TC(2026.16) 111 및 EFRAG 프로젝트 페이지; European Commission, "FAQs on CSRD"(2024.8) Section IV — Art. 40a 보고서는 회복탄력성·회리·리스크 및 Taxonomy 제8조 공시 미요구; Directive (EU) 2024/1306, Recital (1); ESRS-TC 1 ¶1 AR 17A

26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SHIN & KIM
영구인재·세상

② 보고범위 (Perimeter)

III. ESRS-TC 논의 동향

- **Mixed approach**는 기업의 사업·가치사슬·제품 구조가 EU 관련 영향을 의미있게 식별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조건부 선택지임(¶18E).

① Global approach	② Mixed approach* ★
- 모든 주제에 대해 그룹 전체(글로벌) 영향을 공시 - 원칙적 기본값(¶18A) - 보고범위=최종모회사 그룹 연결재무제표 범위 - 장점: 판단 리스크 최소화, 검증 용이 - 단점: 데이터 수집 부담 최대	- 기후(ESRS-TC E1)=글로벌 영향 필수 - 그 외 주제=EU 관련 영향으로 한정 가능 (a) EU 시장에 판매/제공된 제품/서비스에서 기인한 영향 (제3자 유통 포함) (b) EU 소재 사업활동의 영향 - 주제·하위주제·영향군 단위로 선택 적용(¶18C) - 조건(¶18E): 사업·가치사슬·제품구조상 EU 관련 영향 의미있게 식별 가능 - 중요성 평가도 EU 관련 영향 기준으로 수행(¶37A)

Mixed approach를 선택할 경우 추가되는 공시·통제 의무

BP-1 ¶4(a)	¶18A(글로벌)/¶18E(EU 관련) 중 어느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명시	BP-1 AR 1A	EU 관련 영향을 판단한 방법론·모수가정 추정치의 정확도 수준 공시
ESRS-TC 1 ¶6	적용한 완화·선택규정(option)과 그에 따른 정보 공시	감사 대응	범위가 다른 두 데이터셋(글로벌·EU)의 정합성·추적가능성 확보

* Mixed approach는 EFRAG 내부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점이며, 100일 협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요건이 대폭 강화될 수 있는 항목임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7(2026.6)", ESRS-TC 1 ¶18A-18E, 37A, AR 5A; ESRS-TC 2 BP-1 ¶4(a) AR 1A; EFRAG SRB(2026.6.3) 자료

27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SHIN & KIM
영구인재·세상

③ 보고·검증 메커니즘

III. ESRS-TC 논의 동향

- 모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EU 자회사·지점은 보유 정보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해야 함(¶6B).

ESRS-TC 보고 메커니즘 (Art. 40a)			
제3국 최종모회사	EU 자회사 / 지점	제3자 검증	EU 시장 공시
그룹 전체 영향 정보 작성·제공(¶6E)	ESRS-TC 보고서 작성·공시 (순매출 > EUR 200m)	검증의견 첨부 (Art. 40a(3), ¶6C)	EU 공식언어 공표·접근성 확보 (¶118(c))
예외 처리 — 정보 미제공·검증의견 부재 (¶6B-6D)		한국 기업(제3국 모회사) 관점의 함의	
① EU 자회사·지점은 최종모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② 모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보유 입수한 정보만으로 보고서를 작성·공시 ③ 「모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진술(ESRS-TC 2 BP-2) ④ 검증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6D)		- 공시 리스크가 EU 자회사·지점에 귀속 → 모회사의 미협조가 곧 EU 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전환 - 그룹 본사-EU 법인 간 정보제공 거버넌스(책임·기한·품질) 사전 문서화 필요 - 검증(assurance) 대상은 그룹 전체 영향 정보 → 본사 데이터의 감사가능성 확보가 관건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7(2026.6)", ESRS-TC 1 ¶18A-6E, 118(c); ESRS-TC 2 BP-2; Accounting Directive Art. 40a(3)

28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SHIN & KIM
정무연·김태영

④⑤ EU 법령참조의 국제화 · 인용공시(IBR)

III. ESRS-TC 논의 동향

- 제3국 보고서의 「실질적 부분」을 인용공시할 수 있으나, 5대 요건(별도 식별·동시 공시·EU 공식언어·동일 검증수준·디지털 태깅)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EU 법령 참조의 처리	⑤ 인용공시(IBR) 및 IFRS S1-S2 상호운용성
쟁점 — EU 역내 개념을 제3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잔존: SFDR Pillar 3 Benchmark Regulation-EU Climate Law 유래 데이터포인 트 목록은 그대로 유지 (ESRS-TC 2 Appendix A) • EU ETS 방법론은 EU 미적용 지역에도 현지 규정과 정합하는 범위에서 적용 가능 (E1AR21) 해법 — 3단 접근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LO 등)으로 치환 ② 핵심 기술개념을 기존 본문에 직접 내재화 ③ 사안별로 현지 법령을 적용 공시 의무 (BP-1 ¶6A) • EU 법령 개념을 역외에 적용하며 근사치추정을 사용한 경우 → 해당 공시 항목, 사용한 접근법, 정보의 한계, 그 한계가 적용되는 보고범위를 명시해야 함	인용 가능 대상 (¶117) 제3국 법령에 따른 경영보고서·재무제표·기업지배구조보고서·보수보고서, 현지 Pillar 3 유사 공시, EMAS 보고서 등 5대 요건 (¶118) ① 원문에서 해당 DR-데이터포인트를 다루는 별도 정보로 명확히 식별 ② ESRS-TC 보고서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공표 ③ EU 공식언어로 작성·번역 ④ 동일 수준의 검증 ⑤ 동일한 디지털 태깅 요건 충족 확장 (¶120A-120B) ★ 제3국 기준(예: ISSB 기반 보고서)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실질적 부분'까지 인용 가능. 단, 인용 위치(페이지·문단)를 보여주는 목차(table of contents) 제공 의무 IFRS S1-S2 재사용의 한계 ISSB = 리스크·기회 중심 / ESRS-TC = 영향 중심 → 에너지 사용·믹스, locked-in 배출, 1.5°C 정합성, GHG 제거·바이오제닉 배출, 화석연료 활동 등은 별도 작성 필요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2026.6), ESRS-TC 1 ¶117-120B, ESRS-TC 2 BP-1 ¶6A, AR 1A, Appendix A/EU 법령 유래 데이터포인트 목록, E1 AR 21, Cover Note ¶¶(3)(9)

29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SHIN & KIM
정무연·김태영

⑥ 경과규정 (Phase-in)

III. ESRS-TC 논의 동향

- ESRS-TC는 Wave 구분 없이 모든 적용대상에 동일한 phase-in을 부여함

경과규정 비교			
항목	간소화 ESRS (¶125-127)	ESRS-TC (¶121)	
적용 체계	Wave 1(¶125-126)/Other undertakings(¶127) 차등 — 아래 3개 행은 Other 기준	구분 없는 단일 phase-in — 전 적용대상 동일	
주제 기준 유예	E4-S2-S3-S4 최초 2개 사업연도 생략 가능	동일 (E4-S2-S3-S4 최초 2개 사업연도)	
재무효과(AFE)	최초 1년(전체)·3년(정량) 생략 가능	해당 없음 — DR 자체가 삭제됨	
기타	SoC 정량 3년 / SVHC 1년 / S1 일부 항목 1년	동일 (SoC 3년 · SVHC 1년 · S1 일부 1년)	
ESRS-TC Phase-in 매트릭스 (¶121) — 최초 적용 FY2028 기준			
	FY2028 (1년차)	FY2029 (2년차)	FY2030 (3년차)
E4-S2-S3-S4(전체 DR)	생략 가능	생략 가능	공시 의무
E2SoC 정량 정보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생략 가능
E2SVHC(물품 사용자)	생략 가능	공시 의무	공시 의무
S16S17(비IEA)·S1-10-14 일부	생략 가능	공시 의무	공시 의무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2026.6), ESRS-TC 1 ¶121, "Markup vs Simplified ESRS of 6 May 2026"(2026.6) ¶122-127 대비

30

2. 프레임워크 차이 — 간소화 ESRS 대비

DR 변화

SHIN & KIM
신우컨설팅

III. ESRS-TC 논의 동향

- 주제기준의 DR 번호·구성은 간소화 ESRS를 그대로 승계함. 삭제된 것은 E1-2-E1-3-E1-11과 ESRS 2의 예상 재무영향(127)이며, 나머지는 「관점(영향)」과 「범위(EU/글로벌)」만 바뀜

기준	간소화 ESRS (C(2026) 5010)	ESRS-TC ED V1	비교
ESRS2/ESRS-TC 2	BP-12/GOV-1-4/SBM-1-3/RO-1-2/GDR-PAMT	BP-12/GOV-1-4/SBM-1-3/H-12/GDR-PAMT	★ SBM3 예상 재무영향(127) 삭제 · RO-1 · BP-1BP-2 항목 추가
E1 기후변화	E1-1~E1-11 (11개 DR)	E1-1, E1-4~E1-10 (8개 DR)	★ E1-2 E1-3 E1-11 삭제
E2 오염	E2-1~E2-5	E2-1~E2-5 (동일)	DR 동일 · 표제 'RO 관리' → '영향 관리'
E3 물	E3-1~E3-4	E3-1~E3-4 (동일)	DR 동일
E4 생물다양성	E4-1~E4-5	E4-1~E4-5 (동일)	DR 동일 (E4-1 GBF 전환계획 유지) · 최초 2년 생략 가능
E5 자원 순환경제	E5-1~E5-5	E5-1~E5-5 (동일)	DR 동일
S1 자체 인력	S1-1~S1-16	S1-1~S1-16 (동일)	DR 동일 · EEA 특례(S1-7) 잔존 · 일부 DP 1년 유예
S2-S3-S4 사회	각 기준 DR 전체	동일	DR 동일 · 최초 2년 생략 가능
G1 사업활동 수행	G1-1~G1-6	G1-1~G1-6 (동일)	DR 동일 (G1-6 SME 지급관행 포함) · EU 개념 역외 치환

실무 함의: 기존 ESRS DR-DP 매핑표는 「폐기」가 아니라 「재범위화(re-scoping)」 대상임
— 산식 정의는 유지되고, 대상 범위(글로벌 vs EU 관련)와 관점(영향)만 재설정됨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2026.6) 각 기준 목차; 'ESRS-TC ED V1 — Markup vs Simplified ESRS of 6 May 2026'(2026.6) 대비 분석

31

3. 주제 기준 차이와 대응

리스크·시나리오·회복력 삭제

SHIN & KIM
신우컨설팅

III. ESRS-TC 논의 동향

- E1에서 3개 DR(E1-2 기후위험 식별·시나리오 분석/E1-3 기후 회복력/E1-11 예상 재무영향)이 삭제되며, E2-E5는 DR 구성이 그대로 유지됨

E1 기후변화 — DR 매핑 (11 → 8)			E2-E5 — DR 구성 변화 없음, 그러나 세 가지가 달라진다	
E1-1	기후변화 완화 전환계획	유지	① 표제·참조 변경: 'Impact, risk and opportunity management' → 'Impact management', 127의 SBM-3-RO-2 참조가 영향 전용으로 수정 ② Mixed approach 적용: E1은 항상 글로벌, E2-E5는 'EU 관련 영향'으로 한정 가능 (주제·하위주제·영향군 단위, 118B-18C) ③ 경과규정: E4 전체 2년 / E2-5 SoC 정량 3년 · SVHC 1년 생략 가능	
E1-2	기후위험 식별·시나리오 분석	삭제		
E1-3	기후 회복력 (resilience)	삭제		
E1-4	정책 (→ GDR-P)	유지	잔존 EU 개념 — 역외 치환이 필요한 지점	
E1-5	조치·자원 (→ GDR-A)	유지		
E1-6	목표 (→ GDR-T)	유지		
E1-7	에너지 소비·믹스	유지		E1 Scope 1 중 EU ETS 대상 비중 — EU ETS 방법론을 역외에도 적용 가능 (AR 21)
E1-8	Gross Scope 1-2-3 GHG	유지		E2 SoC SVHC = REACH CLP 기준 / E-PRTR-IEPR-IED 참조
E1-9	GHG 제거·탄소크레딧	유지		E3 EU Water Framework Drinking Water Directive
E1-10	내부 탄소가격	유지		E4 EU Birds Habitats Directive,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E1-11	예상 재무영향 (AFE)	삭제		E5 Waste Framework Directive (Annex I) · CRM Act (Reg. 2024/1252) — E5-4 CRM-SRM 특정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2026.6), ESRS-TC E1-E5 각 목차 및 E1 AR 21(EU ETS), E2 18A REACH-E-PRTR-IED, E3 18B, E4 18C, E5-4 113(a) AR 21(Reg. 2024/1252), C(2026) 5010 final, Annex I — ESRS E1 대비

32

3. 주제 기준 차이와 대응

DR 유지

SHIN & KIM
정무연·김민서

III. ESRS-TC 논의 동향

- S 기준은 DR이 하나도 삭제되지 않았으며, 제3국 그룹임에도 EEA 국가별 단체교섭·근로자대표 데이터를 산출해야 함(S1-7 ¶24-25)

제3국 그룹이 마주치는 세 가지 '역외 트랩'	S 기준 DR 현황
① EEA 특례의 잔존 (S1-7) (a) 전체 단체교섭 적용률 (b) EEA 국가별 — 중요 고용국(직원 50명+ & 상위 10개국) (c) EEA 외 — 지역 (region) 단위 사회적 대화(근로자대표 비율, EWC-SE-SCE 노사협의회 존재 여부)는 EEA 국가에 한정 → 미국·한국 본사 그룹도 EEA 세부 데이터 산출 필요	S1 S1-1 ~ S1-16 S2 · S3 · S4 각 DR 전체 → 삭제된 DR 없음. 다만 리스크·기회 및 재무효과 관련 서술(SBM-3 연계)은 소멸
② 벤치마크의 이원화 (S1-9 적정임금) EU 내: 단체교섭 임금 또는 Directive (EU) 2022/2041(적정최저임금 지침) 기준 EU 외: 법정·단체교섭 최저임금(ILO 생활임금 산정원칙 부합) 또는 ILO 원칙 기반 생활임금 추정치 (AR 20)	S 기준 경과규정 (¶121) 최초 2개 사업연도 생략 가능 S2 가치사슬 노동자 · S3 지역사회 · S4 소비자 (전체 DR)
③ Mixed 선택 시 지표 '정의'가 바뀐다 (S1-8) ¶188 옵션 행사 시 'top management' = EU 관련 영향에 책임을 지는 조직(EU 세그먼트·EU 자회사)의 최고 경영진 (AR 17A) → 동일한 DR이라도 Global 방식과 Mixed 방식의 산출값이 달라진다	최초 1개 사업연도 생략 가능 S1-6(비종업원) · S1-7(비EEA 직원) · S1-10-S1-13 일부 DP · S1-14(일·생활 균형)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7(2026.6), ESRS-TC S1 ¶14-25 ¶29, AR 17A AR 20, ESRS-TC 1 ¶121(a)(6), S2-S3-S4 목차

33

3. 주제 기준 차이와 대응

DP 성격 구분

SHIN & KIM
정무연·김민서

III. ESRS-TC 논의 동향

- 지표성 DP는 정의·산식을 그대로 승계하나 산출값은 선택한 보고범위(Global vs Mixed)에 따라 전면 재계산되므로, 매핑보다 범위 결정이 먼저임

G1 사업활동 수행 — DR 6개 전부 유지, EU 개념만 치환	데이터포인트 준비 체크리스트 — 3분류
G1-1 정책 · G1-2 조치 · G1-3 목표 G1-4 부패·뇌물 지표 · G1-5 정치·적 영향력 G1-6 지급 관행 (SME 연체지급) → SFDR PAI 연계 핵심 지표는 그대로 유지	① REUSE — 정의는 그대로, 값은 재산정 E1-7-E1-8-E1-9-E1-10 / E2-4-E2-5 / E3 물 지표 / E4-5 / E5-4-E5-5 / S1-5-S1-16 / G1-4-G1-5-G1-6 → 산식·정의 동일. 단, 선택한 보고범위(Global vs Mixed)에 맞춰 재집계·재산정 필요
EU 개념의 역외 치환 사례	② RETIRE — 폐기 E1-2(시나리오 분석) · E1-3(회복탄력성) · E1-11(AFE) / ESRS 2 ¶27 예상 재무영향 / 리스크·기회·의존도 서술 / 재무 중요성 평가 산출물 → 단, Full ESRS 옵션을 택할 경우에는 그대로 필요 — 폐기 전 범위 전략 확정
G1-1 부패방지 정책 = UN 부패방지협약 기준 (국제규범 채택)	③ REWORK — 신규·재작성 BP-1 ¶4(a) AR 1A(EU 관련 영향 판정 방법론·가정·정확도) / BP-1 ¶6A(근사치 사용 시 한계) / BP-2 (모회사 미제공·검증조건 부재) / I-1-I-2(영향 전용 재작성) / ¶120B 인용 목차
G1-4 유죄판결 = EU 회원국 전과기록, EU 외에서는 해당 관할의 「동등한 등록부」 (AR 5)	
G1-6 SME 연체지급 개념 — 제3국의 SME 정의·지급기한 기준으로 치환 필요	

출처: EFRAG, "ESRS-TC Exposure Draft V17(2026.6), ESRS-TC G1 ¶12 및 AR 5, ESRS-TC 2 BP-1 ¶4(a) ¶6A AR 1A, BP-2, I-1-I-2, ESRS-TC 1 ¶120B-1 ¶120B-1 ¶117-120B

34

IV. 기업의 핵심 쟁점

- 1. 한국 기업의 유형 분류
- 2. 유형별 적용기준 비교
- 3. 시사점

SHIN & KIM
전략컨설팅·세종

1. 한국 기업의 유형 분류

국내 vs CSRD 적용 대상

SHIN & KIM
전략컨설팅·세종

IV. 기업의 핵심 쟁점

-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내 자산규모」·「EU 자회사 자체 규모」·「그룹의 EU 매출」의 조합으로 결정되며, 유형에 따라 기준서·중요성·최초 보고연도가 모두 달라짐

규제대상 ① 국내	규제대상 ② EU 자회사	규제대상 ③ 제3국 그룹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가? (29년 5조원 확대) ▶ FY2027 → 2028.3월 사업보고서	EU 자회사 중 단독으로 1,000명 초과 & 순매출 45% 초과? ▶ 해당 자회사가 CSRD 직접 적용	그룹 EU 순매출 45% 초과 & EU 자회사 지점 중 2% 초과? ▶ 회계지침 제40a조 → ESR-TC		
유형 ① 국내 단독형	유형 ② EU 자회사 직접적용형	유형 ③ 제3국 그룹 적용형	유형 ④ 중첩형 (면제경로)	유형 ⑤ 가치사슬형 (간접)
①Y / ②N ③N	②Y	②N / ③Y	②Y / ③Y	①N ②N ③N
KSSB 제1호·제2호	간소화 ESRs (ESRS 2026)	ESRS-TC (前 N-ESRS)	ESRS-TC 그룹보고 + 자회사 면제	VSMC (자발적기준)
최초 적용 FY2027 2028.3월 사업보고서	최초 적용 FY2027 2028년 현지 보고	최초 적용 FY2028 2029년 최초 보고	최초 적용 FY2027 / FY2028 순차 도래	최초 적용 FY2027 가치사슬 맵 발동
ISSB 기반 기후 중심 공시 Scope 3는 FY2029까지 유예	해당 EU 자회사가 스스로 이중 중요성 평가·인증 수행	한국 모회사가 정보 생산 → EU 자회사·지점이 공시	제19a(9)·29a(9)조 면제로 보고 단일화 가능 여부 검토	EU 고객사 요구의 법적 상한 = VSMC Annex II
유형 ②③④는 국내 관련 ①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 : KSSB와 EU 기준은 「병존 적용」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면제하지 않음				

출처: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와 방안(최종안)」(2026.7.8 당정협의회), Directive (EU) 2025/470(Corinbus II) — 회계지침 제19a·29a·40a조, C(2026) 5010(간소화 ERS)·5011(자발적기준/가치사슬 맵), EFRAG, ERS-TC ED(2026.7.1 SRB 승인), 법무법인(유) 세종 ESG센터 분석

2. 유형별 적용기준 비교

적용 기준 및 중요성

SHIN & KIM
법무법인·세무법인

IV. 기업의 핵심 쟁점

- KSSB는 재무적 중요성(투자자 관점), 간소화 ESRs는 이중 중요성, ESRs-TC는 영향 단일 중요성 : 데이터는 공유하되 중요성 판단 로직은 세 갈래로 설계해야 함

유형	적용 기준서	중요성 관점	최초 보고	보고 주체·형식	인증·검증	한국 기업의 핵심 쟁점
① 국내 단독형	KSSB 제1호·제2호 (기후 우선 의무/그 외 ESG 선택)	재무적 중요성 (투자자의사결정)	FY2027 2028.3월	한국 모회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법정 공시)	2030년 제3차 인증 도입	연결범위 확정 — 첫째에 한해 자산·매출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 증속회사 제외
② EU 자회사 직접적용형	간소화 ESRs (ESRS 2026, C(2026) 5010)	이중 중요성 (영향 + 재무)	FY2027 2028년	EU 자회사 자신의 경영보고서	제한적 확인 (limited assurance)	자회사 단독 요건(1,000명 초과 AND 4.5억€ 초과) 증속 여부의 반복 점검
③ 제3국 그룹형	ESRS-TC (前 NESRS, 2027년 위임법 예정)	영향(Impact) 단일 중요성	FY2028 2029년	한국 모회사가 정보 생산 → EU 자회사·지점이 별도 보고서로 공시	검증의견 첨부 필수(¶6A-6D)	Global / Mixed(¶18B-18E) / Full ESRs 3개 보고 범위 중 선택 — DP 매핑의 전제조건
④ 중첩형	ESRS-TC 그룹보고 + 자회사 면제 조합	선택 경로에 따라 상이	FY2027 부터 순차 도래	모회사 그룹보고서 + 자회사 면 제 공시	경로별 상이	면제요건(제19a(9)·29a(8)조) 충족 시 보고 단일화 — 지금 설계해야 절감 가능
⑤ 별류 체인형	VSME (자발적기준, C(2026) 5011)	요구 상한 규율 (materiality 아님)	FY2027 (캡 발동)	고객사 요구에 대한 응답 형식	해당 없음	EU 고객사는 VSME Annex II를 넘는 정보를 「요구」 할 수 없음 — 방어 논거로 활용

①은 「재무 중요성」을, ③은 「영향 중요성」을 요구함
— 기존 이중 중요성 평가 결과를 ESRs-TC에 그대로 유용할 수 없다(AR 17A).

출처: KSSB 제1호·제2호(2026.2.26 의결, FRS S1 S2 기반), 금융위 제도화 방안 최종안(2026.7.8), ESRs 1(2026) 3.2 중요성, ESRs-TC ED — 재무 중요성 표(¶45-60), 재무요구 DR 식재, R10-12 → 11A.2, ¶18B-18E(Mixed), C(2026) 5011 Annex I(가치사슬 법), 세종 ESG센터 분석

37

3.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ESRS 대응 필요성

SHIN & KIM
법무법인·세무법인

IV. 기업의 핵심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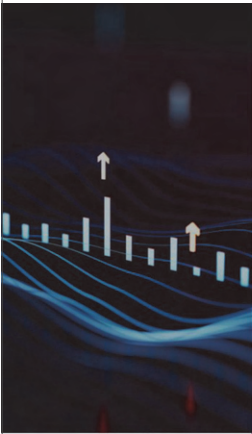
- 국내 제도의 유예·면책에 맞춰 준비하면, 1년 뒤 EU 기준을 만나는 순간 그 유예가 그대로 데이터 결손으로 드러남

1	두 개의 시계, 하나의 데이터	국내 FY2027(2028.3월 공시)과 ESRs-TC FY2028(2029년 공시)은 1년 차이지만, EU 보고용 데이터 수집 체계는 FY2027 중에 이미 가동되어 있어야 함. 실질적 준비 기한을 정하는 것은 국내 일정이 아니라 EU 일정임.
2	중요성은 통합되지 않는다	KSSB(재무적)-간소화 ESRs(이중)-ESRS-TC(영향 단일)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름. 특히 ESRs-TC는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영향도 반드시 식별·공시하도록 하므로(AR 17A), 기존 DMA 산출물의 재사용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함.
3	Scope 3 유예의 합정	국내에는 각 기업의 공시 시작연도로부터 3년 유예를 받지만, ESRs는 E1-B에서 Scope 3를 처음부터 요구함. 국내 유예 일정에 맞춰 준 비하면 EU 보고 시점에 가치사슬 배출량 데이터가 누락되게 됨.
4	면책의 비대칭	국내에는 도입 초기 3년간 순해배상·행정재제·형사책임 면제하나, EU는 회원국 제재체계가 그대로 작동하고 ESRs-TC는 EU 자회사· 지점 공시에 검증의견 첨부를 요구함. 보수적 기준선은 언제나 EU 쪽에서 결정됨.
5	가치사슬 캡의 양면성	VSME는 EU 고객사가 종업원 1,000명 이하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법적 상한임. 우리가 요구받을 때는 방어 논거이지만, 우리 EU 자회사가 협력사에 요구할 때는 스스로 지켜야 할 제약이 됨.

“국내 기준으로 먼저 하고 EU는 나중에”가 아니라, “EU 기준으로 설계하고 국내는 그 부분집합으로 운용한다”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순서임

출처: 금융위 제도화 방안 최종안(2026.7.8) — 시행 초기 3년 순해배상·행정재제·형사책임 면제(그의적 그친위상 제외), Scope 3는 각 대기업 공시 시작연도로부터 3년 유예, 제3차 인증 2030년 도입, ESRs E1-B, ESRs-TC ED AR 17A 별A-4D, C(2026) 5011 Annex II, 세종 ESG센터 분석

38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감사합니다



정영일 ESG센터장 I 수석전문위원

T. 02-316-4317
E. yichoung@shinkim.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www.shinkim.com T 02 316 4114 F 02 756 6226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유)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유)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1부 세션

KSSB 확정과 EU 간소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방향: 데이터 관리와 제3자 인증

권미엽

pwc 삼일회계법인

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방향 : 데이터 관리와 제3자 인증

삼일PwC 권미엽 파트너 (miyop.kwon@pwc.com)

July 2026

- 1 규제 환경의 변화
- 2 데이터 관리
- 3 제3자 인증
- 4 Closing

Agenda



규제 환경의 변화

우리 회사의 ESG data, 자본시장에서 기대하는 제3자 인증에 대응 가능한지?

1 데이터 관리

공시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 제3자 인증 대응

그 데이터를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어떻게 인증(Assurance) 받을 것인가?



2026.2

KSSB 제1·2호 확정



2028
(FY27 정보)

연결 자산 10조원 이상 의무 공시 개시*

* 직접적인 공시 의무가 없는 기업도 지배회사가 의무공시 대상이면, 지배회사의 연결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시 및 데이터 관리 의무 발생



2030
(FY29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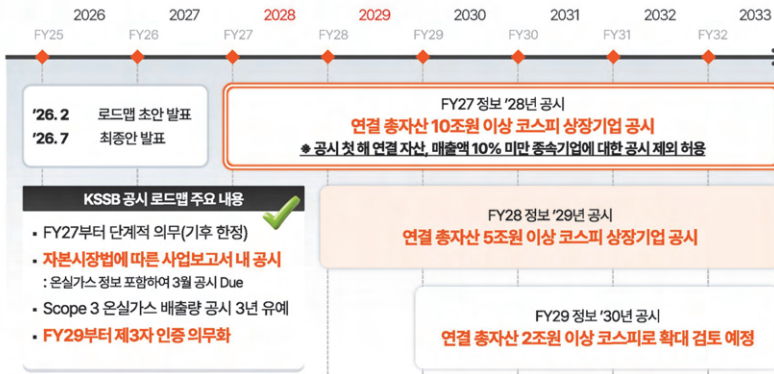
제3자 인증 의무화 개시**

** 직접적인 인증 의무가 없는 기업도 지배기업이 의무공시 대상이면, 지배기업의 연결 인증을 위해 인증 대응 필요

공시 로드맵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KSSB 공시 로드맵에 따라 2028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됨

금융위원회 로드맵 (2026.7.8 확정 발표)



■ [참고] 2026.02 로드맵(안) 발표 후 추가 의견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2026.4.8)	국민연금 의견 (2026.3.30)
의무화 개시	(동일)	(강화) FY26부터 단계적 도입 요구
1차 적용 대상	(동일)	(강화) 연결자산 2조원 이상 KOSPI 상장사
대상 확대(안)	(구제화) FY28 10조 → FY29 2조 → FY30 1조 이상 KOSPI 상장사 공시	(강화) 초기 확대 요구
공시 채널	(강화) 도입시점부터 법정공시 적용	(강화) 도입시점부터 법정공시 적용
인증 의무화	(강화) FY28부터 외부 검증 의무화 규정 포함	(강화) 검증 필요성 지지

1)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Samill PwC

5

연간 실무 캘린더 - 3월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역산 일정

배출량을 포함한 연결 기후공시가 3월 사업보고서에 편입됨에 따라, 1월 데이터 확정·3월 인증보고서 발행의 역산 일정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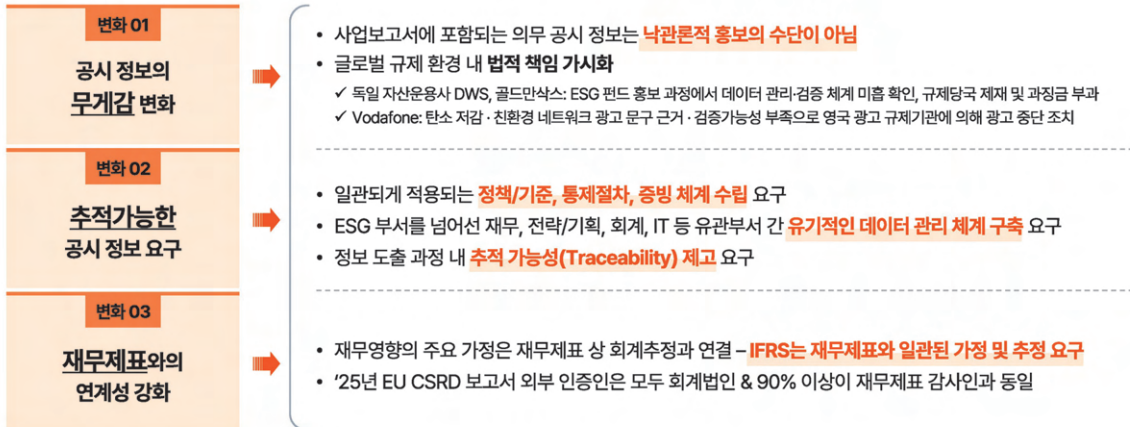


Samill PwC

6

공시 의무화 시대 - 정보 신뢰성 제고 및 법적 책임 강화

- ✓ 자율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의 전환은 정보 생산 프로세스, 보고 시기,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 ✓ 공시 정보는 재무제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에 준하는 공시 정보의 정합성과 검증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Samill PwC

7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 주식 '비용의 성격별 분류' 정보 대비 분석적 검토

- ✓ KSSB 공시는 재무제표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포함됩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은 사업보고서 상 정보와 재무제표와의 중요한 불일치를 검토하고,
- ✓ 감독당국 역시 공시 심사서에서 불일치가 식별되면 사유 소명-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정보의 정합성은 그 자체가 심사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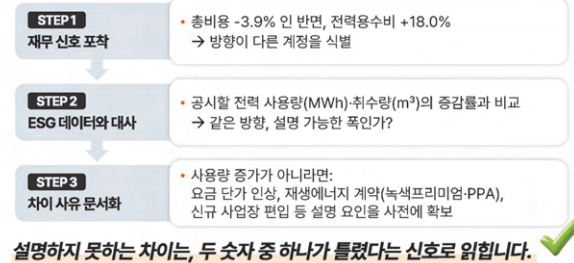
재무제표 주식 발취 —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4(당) 기	제 3(전) 기
원재료사용액 및 재고자산의 변동 등	27,522,827	29,292,768
종업원급여(주2)	2,894,311	2,745,841
협력작업비	3,204,238	3,265,097
전력용수비	903,557	765,871
지급수수료	415,495	421,712
총비	34,940,428	36,247,299
합 계	41,666,671	43,342,352

총비용이 3.9% 감소하는 동안, 전력용수비만 18.0% 증가 - 왜?

분석적 검토의 실행 순서



설명하지 못하는 차이는, 두 숫자 중 하나가 틀렸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재무제표(주식 포함)는 ESG 지표의 공시 전 반드시 대서해야 할 정보입니다.

Samill PwC

2

데이터 관리

Samil PwC

9

데이터 관리 성숙도 5단계

국내 대다수 기업은 엑셀 파일을 통한 관리 또는 시스템에 매뉴얼로 입력하는 수준(Lv.1~2)에 머물러 있으나,
2028년 공시·2030년 인증 대응을 위해서는 내부통제가 내재화된 Lv.4 이상이 요구되어 2단계 이상의 도약이 필요

국내 대다수 기업의 현재 위치는 Lv.1~2

(검증가능성* 미확보, 자본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인증 대응 어려움)

* 검증가능성: 정보는 **정보 자체**나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투입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검증가능하다. (KSSB 제1호 D21)

Lv.1 임기응변

담당자 개인 엑셀,
기준 미문서화

Lv.2 반복 가능

취합 템플릿/DB 존재,
부서별 역할 인지

Lv.3 표준화

방법론 문서화,
전사 표준 프로세스

2028년 공시·2030년 인증 대응을 고려한

최소 수준은 Lv.4

(제3자 인증 대응 가능)

Lv.4 관리·통제

내부통제 내재화

Lv.5 최적화

시스템 기반 산출이력 관리
경영 의사결정 활용

Samil PwC

10

주요 오류 발생 유형

▶ 정보 산정 결과의 오류

- 시스템이 아닌 수기 데이터 관리로 취합 및 분석 불가
- 계산 오류 발생(Human Error)
- 원천 데이터의 오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부재
- 원천 데이터의 확보 제약(산출내역 및 증빙은 담당자 PC에만 저장, 산출 히스토리 및 방법론 유실)

e.g.) 배출량 정보 계산 오류
e.g.) 원천 데이터가 결국 현업에서 준비한 엑셀 파일로 귀결

▶ 정보 집계 기준의 부재 또는 일관성 저하

- 정보를 집계하는 기준이나 프로세스 자체가 부재
- (해외 등) 사업장별 담당자(R&R) 부재
- 계열사/기간별 상이한 집계 기준 적용
- 타 공시자료(사업보고서 등)와 집계 기준, 정보 상이
- 검증 완료 이후 정보 변경

e.g.) 기후 당기 재무영향 집계 기준이나 프로세스 부재
e.g.) Scope 3 배출량 정보 검증 후 변경

▶ 보고 및 관리 범위의 변경

- 주로 국내 사업장만 대상으로 공시
- 정보 보고 및 관리 범위의 변경으로 인한 Data 수정
- 전기와 보고 범위 변경으로 전기 Data를 소급 수정

e.g.) 전기에는 주요 5개사 포함, 당기에는 주요 7개사 정보 포함

▶ 유리한 정보 위주의 Cherry Picking

- 민감 데이터, 과징금, 정보침해건수 등 불리한 정보 미공시

Samill PwC

11

패러다임 전환 - '보고서 발간'에서 '공시 데이터 관리'로

공시는 결과물일 뿐이며, 관리해야 할 대상은 '데이터를 만드는 체계'

지금까지 · 보고서 발간형

연 1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심

부서별 엑셀 취합,
담당자 개인 역량 의존

사후적 정합성 점검,
산정 근거 미문서화

오류가 발견되어도
법적 책임은 제한적

앞으로 · 공시 데이터 관리형

재무공시에 준하는
법정공시 대응

표준 프로세스-시스템 기반
상시 데이터 관리

방법론 문서화 +
산출 이력/증적 + 내부통제

제3자 인증을 전제로 한
인증 가능 체계

Samill PwC

12

ESG 데이터 거버넌스 -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Datapoint 마다 책임자(Owner)를 지정하고, '누가 작성하고 누가 승인했는가'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는 체계 구축 필요

1차 방어선 현업 부서 데이터 생성 및 1차 검증

- 지표별 원천데이터 산출-입력 및 1차 검토 책임 - 지표별 담당부서를 명문화하고, Datapoint 단위까지 담당자 특정
- 환경팀(온실가스-에너지-용수-폐기물) / 인사팀(임직원-안전보건-다양성) / 구매팀(공급망-협력사) / 재무팀(재무 연계 지표)
- 조직 개편-담당자 부재 시 통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이 아닌 직무(Position) 기준으로 지정

2차 방어선 ESG-재무 관리 조직 기준 수립 및 정확성 검증

- 전사 산정 기준-정의서 수립, 부서 제출값의 정확성 검토 및 재무 데이터와의 대사(Reconciliation) 수행
- 이상치-전년 대비 급변 항목에 대한 임계치 기반 검출 및 소명 요구 - 검증 증적이 시스템에 자동 축적
- ESG 조직은 기준-방법론, CFO 조직은 통제-검증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설계가 핵심(중복 시 책임 불분명, 공백 시 점검 부재)

3차 방어선 내부감사-감사위원회 독립적 점검 및 감독

- 1-2차 방어선의 통제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표본 추출을 통한 원천데이터 테스트, 통제 미비점에 대한 시정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법정공시화에 따라 ESG 정보가 감사위원회의 정식 감독 대상으로 편입 - 감독 책임이 실질화

Samill PwC

13

수집·산정 프로세스 표준화 - 인증의 전제조건

STEP 1 산정 방법론 문서화



지표 정의, 산정식,
배출계수, 조직-운영 경계,
추정 근거를 문서화

STEP 2 데이터 추적가능성 확보



원천 데이터 → 가공 → 공시 정보까지
추적 가능하게 연결

STEP 3 통제활동 내재화



입력 승인, 타 시스템과의 대사,
변경관리, 버전관리를
프로세스에 반영

인증인의 주요 질문은 "이 숫자/정보는 어떻게 생성되었습니까?"

문서화되지 않은 방법론과 끊어진 데이터 산출 이력은 인증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갭입니다.



Samill PwC

14

감사위원회·내부감사·경영진의 역할

'실무 부서의 일'이 아니라 이사회까지 이어지는 책임 체계 - 이것이 인증인이 보는 통제환경입니다.

01

감사위원회

법정공시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감독 책임 실질화.
공시 프로세스-인증 결과를 정례 아젠다로 편입하고, 인증기관 선임-독립성 검토에 관여



02

내부감사

ESG 데이터 통제를 연간 감사 계획에 편입.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노하우를 ESG 데이터 통제 점검에 이식



03

경영진 확인 체계 (경영진 진술서)

인증인에게 경영진이 서면진술 제공

: 공시 정보에 대한 작성 책임, 자료 제공의 완전성, 적용 기준-추정의 적정성을 경영진이 서면으로 진술



Samill PwC

15

ICSR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 요구사항 비교

ICSR*에서 정의하는 구성요소, 원칙 및 중점 고려사항은 KSSB 공시 기준서의 거버넌스 관련 요구사항과 모두 align됩니다.
궁극적으로 ICSR과 KSSB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보고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는 동일합니다.

ICSR 구성요소, 원칙 및 중점 고려사항			KSSB 거버넌스 Pillar 공시 요구사항	
통제 환경	이사회 감독 책임	감독 책임의 확립	☑ 의사결정기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 식별
		이사회 전문성 확보	→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감독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
	조직구조, 권한, 책임 정립	보고 라인의 확립	→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안내 받는지
		권한 및 책임을 정의	→	• 관리-감독 역할이 경영진 수준의 직책 또는 위원회에 위임되는지와 어떻게 감독되는지
통제 활동	책임 부여 및 성과평가	책임의 부여	→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에 적용되는 운영규정/정책의 내용
		성과 측정 및 보상 설정	→	• 목표의 설정 및 진척도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성과지표가 보상정책에 포함되는지 포함)
	통제 식별/설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결정 / 통제활동 수립	→	☑ 경영진
	정책-절차를 통한 감독	정책과 절차의 수립	→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의 관리 및 감독을 지원하는 통제 및 절차와 경영진의 역할

* ICSR: Internal Control over Sustainability Reporting

Samill PwC

16

3

제3자 인증

Samil PwC

17

인증 수준의 이해 - Limited vs Reasonable Assurance

인증수준이 낮다고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와 산출 근거의 요건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인증 대응 부담입니다.

인증 결론 표명 방식

절차 범위

준비 강도

글로벌 추세

제한적 확신 (Limited)

소극적 확신 -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질문-분석적 절차 중심

상대적으로 낮음

의무화 초기 표준

합리적 확신 (Reasonable)

적극적 확신 -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 준하는 상세 테스트·입증 절차

높음 - 다수의 Sample에 대한 증빙 Test 및 통제
Test 대응 필요

중장기적으로 상향 이행 논의(호주, 싱가포르)

Samil PwC

18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인증제도 비교 (1/2)

구분	EU 국가 ¹⁾				Non - EU국가			
	프랑스(CSRD)	이탈리아(CSRD)	스페인(NFRD)	유럽연합	싱가포르(제안)	호주	일본(제안)	영국(제안)
공시, 인증 의무화 시기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시차 존재 (상장사: 1~4년/ 대형 비상장법인: 2년)	일치	시차 존재 (1년)	TBD
인증수준	규정 제정 중 (제한적 확산)	규정 제정 중 (제한적 확산)	규정 제정 중 (제한적 확산)	제한적 확산	제한적 확산 (최종적으로 전체 보 고서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목표로 함)	제한적 확산 수준에서 합리적 확산 수준으로 단계적 의무화	제한적 확산 (합리적 확산 상향 여부는 검토하지 않음)	TBD
인증기관의 범위	회계법인 및 기타기관	회계법인	회계법인 및 기타기관	회계법인 및 기타기관 (기타기관은 인가 필요)	회계법인 및 기타기관 (기타기관은 인가 필요)	회계법인	회계법인 및 기타기관	회계법인 및 기타기관

1) 프랑스, 이탈리아는 CSRD 법제화를 완료하였으며 스페인은 지속가능성정보에 대한 인증이 요구되지 않던 NFRD 시기에 선제적으로 인증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EU CSRD의 법제화를 진행 중임

Samill PwC

19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인증제도 비교 (2/2)

구분	EU 국가				Non - EU국가			
	프랑스(CSRD)	이탈리아(CSRD)	스페인(NFRD)	유럽연합	싱가포르(제안)	호주	일본(제안)	영국(제안)
인증기준	EC에서 채택한 인증기준	EC에서 채택한 인증기준	명시적 규정 없음	27.1 까지 인증기준 채택 예정 ¹⁾	ISAE 3000 ²⁾ , ISAE 3410, SSAE 3000, SSAE 3410, AA1000, ISO 표준	ASSA 5000 ³⁾	기업회계심의회 등에서 ISSA 5000 과 정합성이 확보 된 인증기준 제정	ISSA 5000 기반의 영국 기준
인증제도의 사후감독	감독기관: 프랑스 금융시장청 인증인 감독기관: H2A (High Authority for Audit)	감독기관: 이탈리아 증권감독위원회 (CONSOB)	감독기관: 스페인 증권감독위원회 (CNMV)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품질관리감독도 입	규정 없음	감독기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	당분간 금융청이 감독을 수행하고 충분한 실수가 축 적된 후 자율규제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감독기관: 재무보고위원회 (FRC)

1) CEAOB(유럽감사감독기구위원회)에서 ISSA5000을 기반으로 EU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 조연을 EC에 제공 예정

2) 또는 ISSA 5000 등 후속 지속가능성인증기준

3) 호주감사인증기준위원회(AUASB)에서 ISSA 5000에 부합하게 제정한 기준

Samill PwC

20

4

Closing

Samil PwC

21

의무 공시시대의 인증 - 준비 과제

과제 1.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확보 가능한 데이터 체계

- 원천 데이터, 배출량 산정 근거, 방법론-가정 문서화
- 데이터 수집→산정→검토→승인의 추적 경로(Audit Trail) 확보
- 정확성-완전성-검증가능성(KSSB 제1호 질적 특성) 충족
- 재무제표 범위와 지속가능성 공시 범위의 일관성 유지(연결 기준 취득, 처분 등)

EU: 74% 기업이 스프레드시트 관리 → 인증 단계에서 한계 노출

과제 2.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재무보고 수준)

-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수집-집계-보고 프로세스 전반의 통제 설계
-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서 마련 필요
-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기능 강화
- 수작업 엑셀 영역은 우선적으로 통제를 강화

ESMA(유럽증권감독원): 재무보고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 체계 요구

과제 3. 사전 인증 (의무공시 직전 연도, 예: FY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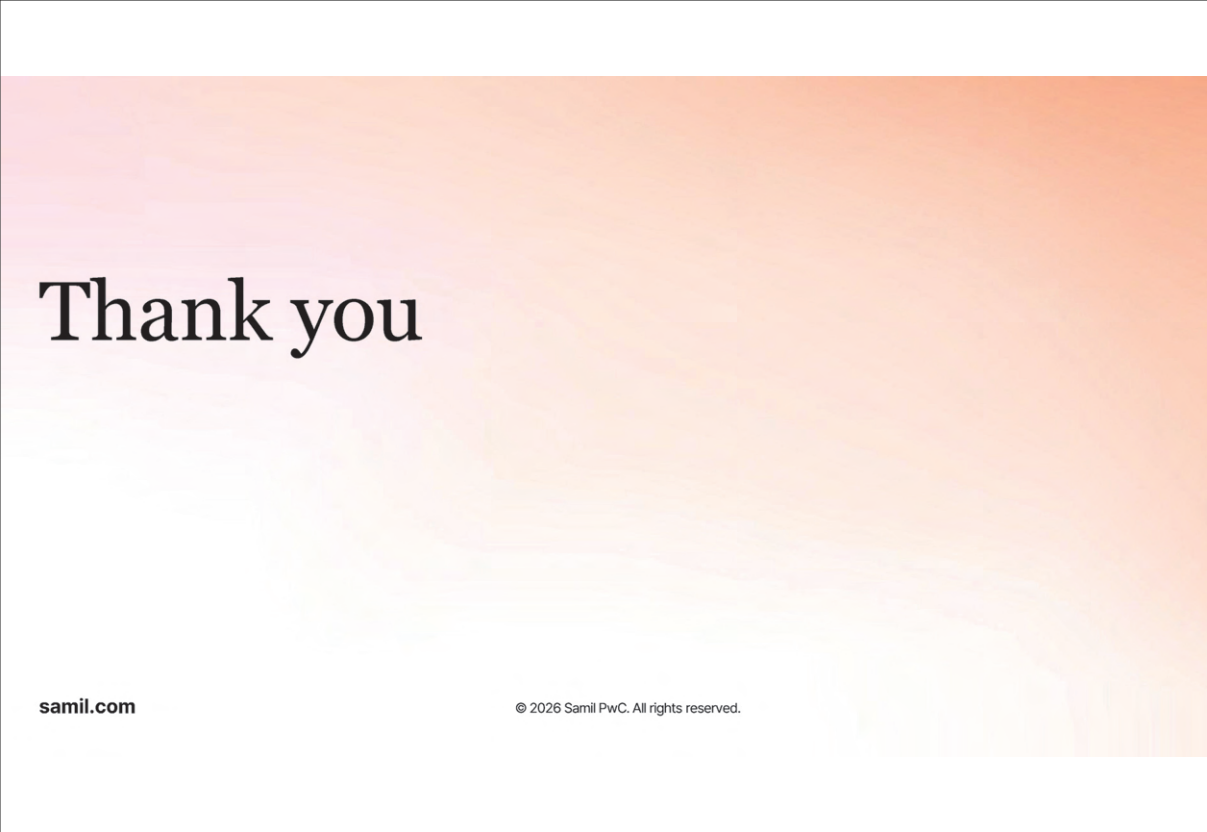
- 의무공시 직전 연도에 사전 인증(Dry-run) 실시
- 본 공시 전 데이터-통제 미비 영역 조기 식별 및 보완
- 경영진 확인서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준비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을 사전 인식
- 인증 대응 조직 역량 확보

과제 4. 공시 시점 인증 (의무공시 연도, 예: FY27)

- 인증 계약 조기 체결을 통한 인증 업무 조기 착수
(FY27에 대한 인증의 경우 FY27 기중에 인증 계약 체결을 통한 연중 인증 체계 수립 필요)
- 종속회사 별도 인증시 인증기준, 인증기관 적격성 사전 협의

Samil PwC

22



Thank you

samil.com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2부 세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2부 세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ESG 규제대응을 위한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

김승희

ESG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

2026. 07.30.

ESG경영지원실 김승희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원 소개
ESG인프라지원단

KEITI

글로벌 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플랫폼 중심 기능

ESG경영지원실

- 환경정보공개제도
- **ESG 컨설팅**, 교육
- Scope III 산정 지원 등



녹색투자지원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정립
- 녹색채권 발행 지원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등



전과정평가실

-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 LCI DB 구축/운영
- 제품 환경성 규제 대응 등



1

ESG 규제 강화

- 환경정보 공시
- 그린워싱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녹색위장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

2

투자자 ESG 요구 증대

- 녹색분류체계
- 녹색채권

투자 의사결정 시 환경요인 검토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환경책임투자 확대

3

국제 환경규제 확대

- 공급망실사
- 탄소무역장벽

공급망의 환경위험요인 점검공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수출제품 타격 우려

4

국내 ESG 제도 확산

- 제도화 시행
- ESG 전문역량

정부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확충 발표

기업의 ESG 경영 정보공개 중요성 인식증대

기업 ESG 경쟁력 강화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ESG
인프라지원단

수출제품 탄소경쟁력 강화

ESG 대응역량 제고



CONTENTS
목 차

CHAPTER I ESG 개념 및 주요 이슈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	--



01 ESG, 왜 중요한가?

» ESG 개념 및 주요동향 및 지원 필요성

개념 기업경영 및 투자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 하여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흐름

동향 기업과 투자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ESG 기준에 대한 표준화 및 관련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

ESG가 글로벌 이슈로 자리매김한 배경

파리협정 이후(COP21)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 확대

감축, 손실과 피해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의제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확산

그린,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국제기구, EU 등
ESG 제도화

ESG 이행 부담을 넘어
계약, 수주 파기까지 확산



탄소국경세(CBAM) 적용

5

02 ESG,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례 1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형
ESG 구매체계' 등 공급망 재편 확산

- 신규 공급사에 대해 '환경 및 인권법규 준수' 등 ESG 관련 기본 자격 심사해 자격 부여
- 기존 공급사에 대해 ESG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미달 시 개선유도,
※ '20년 협력업체 중 203개사(12%)와 계약 해지
- '25년까지 친환경 구매 금액 20억 달러까지 확대
('21년도 대비 약 2배 증가)



사례 2

발주처의 "ESG 경영" 충족 등
조건부 계약 요구 확대

- 국내 중소기업 W社, 이스라엘 Alma社와의 계약에서 ESG 경영 수준 만족할 경우, 레이저 장비 납품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 체결
(ESG 요건 미충족시 계약 파기)



사례 3

국내 기업 약 52.2%, ESG 미흡으로
계약·수주 파기 위기감

- 국내 수출기업 300곳 중 약 52.2%가 ESG 미흡으로 향후 고객사로부터의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대한상공회의소, '22년)
- ESG 실사 대비 수준을 묻는 항목에는 '낮다'는 응답이 77.2%로, 전반적으로 대응 준비가 부족



우리나라는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50.1% 차지('26.1분기)
(100대 기업 73.4% 차지)

6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 현황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사업 현황					
» 글로벌 ESG 규제 본격화 및 해외 발주처 요구로 수출 기업의 무역장벽·애로증대 규제 범위의 공급망·제품 단위 확대로 전사 및 협력사 통합관리 부담 가중					
규제명	주요 내용	환경무역규제		규제대응 지원(컨설팅)	
		세부 요구사항	영향 업종	직접	간접
ESG 공시 (ISSB 등)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EU CSRD, ISSB, KSBB)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3) 산정 • ESG 목표 설정 및 이행 현황 공시 등	• 전 업종	• 환경무역규제대응 (Scope 3 산정, 협력사 Scope 1, 2 산정)	• ESG 경영 체계 구축
EU 공급망 실사지침 (CSDDD)	• 인권·환경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 의무화	• 공급망의 인권·환경 리스크 식별·예방·저감 이행 • 정기적 실사 및 결과 공개 등	• 전 업종	• 환경무역규제대응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 ESG 경영 체계 구축
EU 탄소 국경조정제도 (CBAM)	• EU 수입 제품에 대한 EU 탄소가격 반영 의무화	• 수입제품 정보 신고 및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 CBAM 인증서 구매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 석유화학, 이차전지 ^{향대} 제조	• 탄소저감제품 설계·생산	• ESG 경영 체계 구축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 포장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사용·재활용 확대	•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 포장 최소화 및 유해물질 제한 • 환경성에 대한 라벨링 등	• 전 업종	• 탄소저감제품 설계·생산	• ESG 경영 체계 구축
자동차 배출규정	• 규제 물질 확대 및 전기차배터리 내구성 기준 도입	• 배기 오염물질 및 비배기 오염물질 규제 신규 도입, 기존 물질 규제기준 강화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배터리 내구성 기준 도입 등	• 자동차	• 탄소저감제품 설계·생산	• ESG 경영 체계 구축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KEITI

수출 상위 업종 공급망 ESG 역량 강화 지원

목적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규제 대응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개선, ESG 경영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업종

- 주력 수출 업종 기업(수출 상위 15대 품목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기업 등)
- 대기업 협력업체 및 규제 현안해결 기업 우선 지원('25년 198개사 컨설팅 지원)

※ 대중소 협력체계 구축 → 상생협력 MOU 체결(~'24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LG화학)
('25년 롯데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협회 등 신규 MOU 체결)



기업 진단

역량 자기관단
체크리스트 작성

경영진, 담당자
인터뷰

ESG 관련 이슈 파악

개선방안 도출

ESG 경영체계
구축

ESG 경영을 위한
조직구성,
목표수립,
경영 매뉴얼 제공

평가, 규제대응

국내외 평가기관
및 이니셔티브
대응, 공시,
글로벌 ESG규제
대응 지원

제품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친환경 공정개선

공정 현장진단 및
개선 아이템 발굴
·성과예측

개선사항 실행

개선 아이템 도출 및
단기·중기 목표 설정

개선사항
현장반영 지원

※ 설비개선자금 지원사업과 연계
(스마트공장 등)

9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규모

KEIT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규모 변화('10~'26년)

사업
변화

그린업 프로그램('10~'21)을 시작으로, 2022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

◆ 2024년부터 [기초], [심화] 컨설팅으로 분류하여 운영

사업
변화

사업 초기 대비 예산 57.9배(100백만원→5,790백만원), 지원규모 25배 상승(10개사→250개사)
친환경경영(ESG) 컨설팅으로 변경 이후 예산 2.6배, 지원규모 3.1배 상승



〈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2010~2026) 〉



10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2026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26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주요 내용

ESG 경영체계 구축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방안 발굴 • (친환경공정 개선) 법인 단위 생산공정 정밀진단, 실현가능한 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 • (지원사업 연계) 에너지 관련 설비 개선 지원사업 연계 지원
[신규] 고탄소 배출업종 탈탄소 지원	• (탈탄소 컨설팅)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집중 지원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해 컨설팅 성과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방안 강구
환경 무역규제 대응	• (업종 특화 모의 실사) 업종 맞춤형 모의실사 진행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실사 대응) 고객사 요구에 따라 평가 대응, 실사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대응규제 다양화 검토) EU 공급망 실사지침 외 배터리 규정 등 실사 관련 규제 요건 조사
탄소저감 설계생산 지원	•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탄소 배출 감축) 배출량 산정 결과 기반 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 1] ESG 경영체계 구축

ESG 공감대 형성부터 공정진단까지 ESG 경영 기본기 다지기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추진목적

ESG 경영체계 구축 중심의 ESG 기초 역량 제고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협약전형, 일반전형)

후속

원청 및 타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컨설팅 실효성 제고

① 원청 역할 강화 : 원청의 협력사 지원 예산과 컨설팅 매칭 (컨설팅 후속으로 시설개선자금 지원)

② 설비개선·금융우대 활용 : 설비개선자금 (스마트생태공장) 및 융자, 우대보증 연계 (기보/신보 보증 우대지원)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

- 규제 동향 등 ESG 핵심 정보 제공
- ESG 자가진단 및 개선
※ 중 27개 항목 운영 : 환경(17개), 사회(6개), 지배구조(4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
- 저감 아이템 도출

친환경공정 실현

- 공정진단 및 개선안 도출
- 적용 기술 타당성 검증(ROI)
- 스마트 생태공장 등 지원사업 연계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02-2284-1968/1988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 2] 고탄소 업종 집중 탄소저감 컨설팅

KEITI

[신규] 고탄소 업종 집중 탄소저감 컨설팅 강화



고탄소업종이라 탄소배출량 감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추진목적

국가 NDC 달성을 위한 고탄소 업종 협력사 집중지원

지원대상

고탄소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고탄소 업종이란?

산업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고탄소 다배출 12대 업종('25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탈탄소 방안 제공(KEITI)

- 온실가스 감축경로 제시
-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제3자검증
- 녹색전환 공정 진단·개선 컨설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기금 등 연계)

탈탄소 아이템 실현(재단)

- 고탄소 업종 기업 모집
- 녹색전환 공정 개선 및 비용 지원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02-2284-1968

13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 3]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KEITI

고객 요구대응부터 협력사 관리방법까지 공급망 관리 지원



국내외 고객사가 ESG 공급망 관리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추진목적

공급망 실사규제 '핀포인트' 대응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일반전형, 협약전형)

협약전형

①기업현황진단

②업종특화협력사대상 모의실사

③부적합사항개선컨설팅

④실제개선을위한원청지원연계

일반전형

①실사정책및프로세스수립지원

②공급망분석및부정적영향식별

③모의실사지원및부적합사항개선

④이니셔티브대응지원



실사 대응 역량 강화

실사대응을위한체계구축(행동강령등)

협력사 관리 범위 및 우선순위 설정

실사 대응 체크리스트 제공(고도화)



모의실사 및 부적합사항 개선

실사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 실사 지원

체크리스트 부적합 사항 개선 지원

단기/중기과제분류및단기과제해소지원



“실사” 대응 컨설팅 검토

실사와 관련된 규제별 요건 조사

* 배터리 규정, 핵심원자재법,
산림전용방지법 등

해당 규제 대응 컨설팅 가능 여부 검토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02-2284-1988

14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KEITI

[지원사업 4] 탄소저감제품 설계·생산 컨설팅

전과정 기반의 제품 탄소 경쟁력 강화



고객사가 전과정 관점의 납품 제품 탄소 배출 저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진목적

제품 단위 탄소저감 역량 제고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협약전형)

전과정 평가 및 내재화

제품 생산 단계별 탄소 배출량 진단

탄소 배출 요인 및 취약과정 파악

제품 탄소관리 내재화 교육

제품 탄소저감 생산지원

전과정 탄소 감축 시나리오 도출

탈탄소 아이템 및 공정개선 지원

탄소 감축 잠재량 및 타당성 검토

제품 관련 규제 동향 연구

에코디자인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 요건 조사

컨설팅 제공 가능성 검토

Supply chain (1차~2차 협력사)가 함께 하는 탈탄소 방안 도출

우리가 수출 산업 업종의 탄소 경쟁력 강화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02-2284-1966

15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KEITI

[참고]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주요 지원 사례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대상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A

현안

고객사 ESG평가 결과 저조로 거래중단 위기

대응

사내 환경리스크 관리·점검, 프로세스 마련 등을 통해 ESG평가에서 28점이 향상되어 계약유지 조건 충족 기여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대상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B

현안

해외 고객사 공급망 실사 부담 가중

대응

해외 고객사(르노) ESG 평가(EcoVadis) 대응 지원(상위 50% → 35% 이내)으로 3년간 실사 대상 면제

제품 온실가스 저감

지원대상

식품 제조업체 C

현안

EU 수출을 위해 제품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

대응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를 재생 원료로 전환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 저감 솔루션 제공
※ 탄소 배출량 7.70E-02tonCO₂eq./년 절감

공정 개선

지원대상

반도체 등 기계부품 생산업체 D

현안

절삭유 전량 폐기 및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청구

대응

절삭유 재생장치를 설치하여 폐집에 묻은 절삭유를 회수하고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 및 절삭유 구매비용 절감
※ 절삭유 사용량 32,875kg/년, 처리비용 8,219천원/년 절감

16

CHAPTER
II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신청 방법

KEITI

지원규모

250여개 내외('26년 기준)

공고일정

매년 초('27년 상반기 공고 예정)

참가비

무료

신청방법

일반기업: 지원서류 온라인 제출(환경책임투자플랫폼)
※ 환경책임투자플랫폼(gmi.go.kr) - 환경경영 - ESG 컨설팅 공고 알림 서비스 신청

참고사항

컨설팅 공고 알림 서비스 운영
※ 환경책임투자플랫폼(gmi.go.kr) - 환경경영 - ESG 컨설팅 공고 알림 서비스 신청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QR코드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02-2284-1966, 1968, 1972, 1988

19





2026 상반기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경쟁력 포럼

2부 세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공급망 ESG,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성

김광일

KOREA FOUNDATION FOR COOPERATION OF LARGE & SMALL
BUSINESS, RURAL AFFAIRS

2026 ESG 지원사업 소개

공급망 ESG,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발표자료 · 2026

주요 ESG 지원사업

- 01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 02 협력사 ESG 지원사업
- 03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 04 글로벌 규제 대응 공급망 ESG
- 05 경기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 06 경상남도 공급망 ESG 지원사업

기타 사항

- 01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 02 ESG 우수기업 확인서 및 인센티브

01 / 22

AGENDA · 목차

발표 순서

재단 소개부터 ESG 지원사업 안내,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까지

01

기관 소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

02

ESG지원사업 구성

정부사업 · 민간사업 · 타기관 연계사업
재원 구조 및 성격 비교

03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정부사업 1 · 민간사업 1 · 타기관 연계사업 4
사업별 재원·요건·한도 비교

04

ESG 표준 가이드라인

2026년 5탄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체계
지원사업 평가 지표와의 연계

05

ESG 우수기업 확인서 · 인센티브

5개 은행 금리우대 · KOTRA 수출지원
정부사업 가점 · ODA·R&D 우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02 / 22

01 기관 소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3 / 22

PART 01 · 기관 소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및 농어업 부문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

LEGAL BASIS · 설립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한다.

MISSION & ROLES

설립 목적 및 주요 역할

대·중소기업 농어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통한
국민경제 균형 발전 및 공급망 지속가능성 제고

- 01 상생협력기금·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운용
기업 출연금 관리 / 기금 지원사업 운영
- 02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위원회 안전·의사결정 지원 및 정책 실행
- 03 공급망 ESG 지원사업 전담 수행
정부·민간·타기관 연계사업의 통합 관리
- 04 동반성장 정책 조사·연구·교육·국제협력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상생문화 확산

HISTORY · 주요 연혁

기관 주요 연혁

- 2004 10. 2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상생협력법 제정에 따른 설립 근거 마련
- 2010 12. 13.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사무국 지정)
민간 협의기구 산성, 재단이 사무국 운영
- 2017 03. 0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칭 변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 추가
- 2024 10. 「상생협력재단」 별칭 지정
대외 커뮤니케이션 명칭 통일 및 브랜드 강화

PART 01 · 기관 소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민간 자율 합의기구 / 재단에 사무국 설치

LEGAL BASIS ·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

ROLES & FUNCTIONS

주요 역할 및 기능

위원 구성: 위원장* 포함 총 30인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익 대표)
* (초대) 정운찬 前국무총리, (제7대, 8대) 이달곤 위원장

- 01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 및 공개
- 02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추천
업종별 이해관계자 조정 및 정부 추천
- 0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소상공인 보호 대상 업종 심의 추천
- 04 상생협력 정책 심의·조정
동반성장 관련 주요 정책의 민간 합의 도출

HISTORY · 주요 연혁

위원회 주요 연혁

- 2010
12. 13.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민간 자율기구로 출범, 재단에 사무국 설치
- 2011
09.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개시
민간 합의 기반 업종 지정 제도 도입
- 2012
06. ● 동반성장지수 최초 평가·공표
대기업 동반성장 실적을 지수화하여 공표
- 2018
12. ●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근거 마련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기능 확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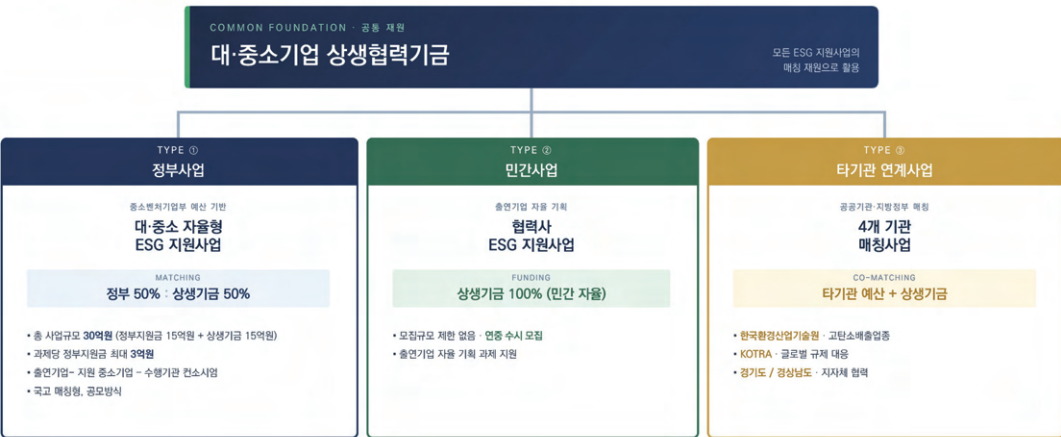
05 / 22

02 ESG 지원사업 구성

PART 02 · ESG 지원사업 구성

사업 주요 구성

재원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은 **상생협력기금**을 공통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07 / 22

PART 02 · 사업 유형 비교

유형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재원 성격 · 지원한도 · 매칭 비율 요약 비교표

유형	사업명	매칭 재원	지원예산 규모	재원구성 비율	주요 목적
TYPE ① 정부사업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중기부 국비	15억원	정부 50% : 기금 50%	해외 ESG 규제 및 정부정책 대응,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TYPE ② 민간사업	협력사 ESG 지원사업	매칭 없음 (상생기금 단독 활용)	매칭 없음 (상생기금 한도 없음)	상생기금 100%	출연기업 자율 기획, ESG 활동의 유연한 지원
TYPE ③ 타기관 연계사업 공공기관 지자체 책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시범사업	기후부 국비	3억원	정부 70% : 기금 30%	고탄소배출업종 탈탄소 역량 강화
	[KOTRA] 글로벌 규제 대응 공급망 ESG 지원사업	산업부 국비	1억원	정부 50% : 기금 50%	해외 ESG 규제 대응
	[경기도] 경기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경기도 지방비	1억원	정부 50% : 기금 50%	경기도 소재 협력사 ESG 활동 지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급망 ESG 지원사업	경상남도 지방비	1억원	정부 50% : 기금 50%	경남 소재 협력사 ESG 활동 지원

※ '26년도 사업공고 및 추진현황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차년도 사업 공고 시 세부내용 변동 가능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08 / 22

03 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9 / 22

PART 03 · 세부 사업 안내

TYPE ① 정부사업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국고와 상생협력기금을 1:1 매칭하여 대·중소기업 공동 ESG 활동을 지원

BUDGET · 정부지원금 예산 규모

15억원(중기부)

총 사업비 30억원(정부 15억원 + 민간 15억원)

FUNDING · 자원

정부 50 : 기금 50

상생협력기금 50% 이상 분담 가능

CAP · 과제당 지원 한도

최대 3억원

탄소저감 산업안전 설비지원 과제에 한함 (이외 2.5억)

PERIOD · 모집기간

'26. 2. 26. ~ 3. 26.

'26년도 참여기업 모집 마감

01 · OVERVIEW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외 ESG 규제·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 ESG 활동 지원

· 사업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주무부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담기관)

· 참여 방식

출연기업이 수행기관 및 지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02 · ELIGIBILITY

지원요건 및 제한사항

· 신청자격 (수혜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유형 (자율 기획)

환경(E)

사회(S)

실사 지원

공사·인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10 / 22

PART 03 · 세부 사업 안내

TYPE ④ 타기관 연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계사업

글로벌 규제 대응 공급망 ESG 지원사업

EU-미국 등 주요 수출국 ESG 규제에 대응, 국내 공급망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매칭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BUDGET · 정부지원금 예산 규모

1억원(산업부)

총 사업비 2억원(정부 1억원 + 민간 1억원)

FUNDING · 자원

정부 50 : 기금 50

상생기금 50% 이상 분담 가능

CAP · 출연기업당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정부지원금 기준

PERIOD · 모집 기간

'26. 6. 4. ~ 6. 26.

'26년도 참여기업 모집 마감

01 · TARGET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글로벌 ESG 규제 대응 등 ESG 역량 강화가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필수 구성 요건

상생기금 활용을 위해 지원 대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구성 필수

· 주요 지원 규제 영역

EU CBAM

CSRD-CSDDD

US 공급망 실사

고객사 ESG 실사

02 · SUPPORT & GOVERNANCE

지원 내용 및 추진체계

· 지원 내용

컨설팅: 지표 선정 · 교육 · 현장 코칭 · 확인서 발급

기타 지원: 국제인증 취득 · 정보공시 · 탄소감축·안전 설비 교체

· 추진체계 (공동 운영)

협력재단

상생기금 조성·운영

출연기업 및 과제 선정

KOTRA

국비 예산 조성·운영

사업 전반 관리 지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13 / 22

PART 03 · 세부 사업 안내

TYPE ④ 타기관 연계 경기도 연계사업

경기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대·중견기업의 경기도 소재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예산과 상생협력기금을 매칭하는 지역특화 지원사업

BUDGET · 정부지원금 예산 규모

1억원(경기도)

총 사업비 2억원(경기도비 1억원 + 민간 1억원)

FUNDING · 자원

정부 50 : 기금 50

상생기금 50% 이상 분담 가능

CAP · 출연기업당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경기도 지원금 기준

PERIOD · 모집 기간

'26. 4. 6. ~ 4. 24.

'26년도 참여기업 모집 마감

01 · OVERVIEW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예산과 상생협력기금을 매칭하여 지역 공급망 ESG 활동 지원

· 참여 요건

경기도 소재 협력 중소기업 및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출연기업

· 수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기업

02 · GOVERNANCE

추진체계 및 지원 내용

· 공동 운영기관

협력재단

상생기금 조성·

사업 관리

경기도

자립비 지원·

정책 연계

· 지원 내용 (자율 기획)

환경(E)

사회(S)

실사

공사·인증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14 / 22

04 ESG 표준 가이드라인

PART 04 · ESG 표준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협력재단이 발간·관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ESG 자가진단 표준 체계 · 2026년 1월 제6판 발간

BACKGROUND

가이드라인 제작 목적

- 해외 ESG 규제의 본격화
EU CBAM · CSRD · CSDDD 등 공급망 실사 확대
- 대기업 ESG 실사 확산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ESG 평가·요구 증가
- 중소기업 대응 여력 부족
복잡한 지표·평가체계, 인력·비용 한계
- 중소기업 맞춤형 표준 필요
실용성 있는 자가진단 역량 강화 지표 체계

STRUCTURE · 주요 구성 항목

주요 글로벌 규범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79개 지표로 구성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E) · 14개 에너지 온실가스 물수 폐기물 오염물질 친환경 공정 제품	사회 (S) · 54개 인권 노동 다양성 산업안전 보건 공급망 지역사회	지배구조 (G) · 11개 윤리 컴플라이언스 이해관계자 정보공시 ESG 경영체계

HOW TO USE · 활용

주요 활용내용

- 01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도구 · 자사 수준 점검 및 개선 방향 도출
- 02 자원사업 평가 지표 · 자율형·협력사 ESG 자원사업 성과 평가 기준
- 03 확인서 발급 기준 · 지표 준수를 80% 이상일 때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17 / 22

PART 04 · ESG 표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대외 공개('26. 1. 28.)

※ 파트너스 ESG 홈페이지(<https://esg.winwingrowth.or.kr/>) 내 자료실

No	구분	발행기관	제목	호수	작성일
1	가이드라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1592	2026-01-28
2	가이드라인	환경성당위원회	공급망 ESG 관련 가이드라인	2453	2024-12-10
3	안내자료	환경성당위원회, 중소기업연합회	2025년 동반·중간 ESG 지원사업 후원 신청서 양식 자료	629	2025-03-22

〈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제6판, '26. 1.) 〉

〈 파트너스 ESG 홈페이지 자료실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18 / 22

04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9 / 22

PART 05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 인센티브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20 / 22

PART 05 · 인센티브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21 / 22

THANK YOU

공급망 ESG,
재단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2026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CONTACT · 문의처

상생협력재단 ESG지원부

협력사 ESG 지원사업 (민간)

김진철 과장 (02-368-8436, kjc@win-win.or.kr)
민혜민 사원 (02-368-8712, mhm@win-win.or.kr)

자율형 ESG 지원사업 (정부)

김광일 과장 (02-368-8425, kgi@win-win.or.kr)
김다영 대리 (02-368-8712, kimdy@win-win.or.kr)

평가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평가도 연계사업)

ESG 가이드라인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신동필 전문위원 (02-368-8776, sdp@win-win.or.kr)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계사업)
글로벌 규제대응 공급망 ESG 지원사업 (KOTRA 연계사업)
광상남도 공급망 ESG 지원사업 (광상남도 연계사업)

김광일 과장 (02-368-8425, kgi@win-win.or.kr)

HOME PAGE · 홈페이지

상생협력재단
www.win-win.or.kr

파트너스 ESG (가이드라인, ESG 확인서)
esg.winwingrowth.or.kr

22 / 22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

